

MI5-5 / 1987. 12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1985~2001) Ⅴ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分析

農地所有의 變化를 中心으로

崔 洋 夫(研究委員)

吳 乃 元(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비

면

머 리 말

1960 ~ 70 년대 를 거치면서 급속히 진전되어 온 한국사회의 産業化는 農村의 人口構造, 家族形態, 農家經濟, 社會集團, 營農形態 등 농촌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社會變動을 가져온 주 原因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農業, 農村, 農民에 대한 研究가 巨視的이고 總量的이며 平均的인 분석에 치우쳐 農村社會經濟의 主體者인 農民, 農家 그리고 마을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간과한 사례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1985 ~ 2001) 研究는 이와같이 産業社會化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촌사회의 變化過程을 미시적으로 관찰, 분석하기 위하여 당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長期 研究課題 중의 하나이다. 農村住民, 農家 및 마을사회를 분석 단위로 하여 그들이 社會變動過程에서 經驗하는 문제들과 이에 대응하는 行動樣式, 그리고 그 변화결과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因果를 밝히는 일은 産業社會로의 轉換을 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時代的으로 요청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本 調査研究는 韓國農村社會 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1985 ~ 2001) 研究의 第3次年度 研究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韓國農業의 機造改善이 농업의 장래문제와 연관되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農家の 動態的 變化, 즉 農地 등의 資産蓄積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일 것이다. 특히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의 상속패턴이 농가의 資産蓄積에 어떻게 작용하여 왔는가는 農地制度의 改善方向에 대해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사업에 참여한 研究陣들의 勞苦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사마을 住民들에게 感謝한다.

1987.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目 次

第1章 序 論

1. 調查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1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2

第2章 理論的 背景－「F－싸이클 假說」

1. 問題의 提起 4
2. 農家에 對한 既存認識의 批判 8
3. 家族經濟로서 農家經濟와 「F－싸이클」 12
4.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 16
5. 檢證假說 20
- 補論：차야노프의 農家家族週期에 對한 理論 21

第3章 農地의 相續過程과 小農의 創出

1. 世代間의 農地相續形態 27
2. 相續을 통한 小農의 創出 33
- 補論：父代의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의 規模 43

第4章 世代內에 있어서 農家의 動態的 變化

1. 擴張期의 農地所有變化 45
2. 收縮期의 農地所有變化 58
- 補論 1：農家의 出發形態 62
- 補論 2：分析除外農家의 變化 65

第5章 要約 및 結論

1. 要約	68
2. 結論 및 政策的 含蓄	71

附 錄

1. 附 表	73
2. 調査票	81

表 目 次

第 1 章

表 1- 1 調査家口數 및 日程	3
-------------------------	---

第 2 章

表 2- 1 耕作規模別 農家戶數의 變動	5
表 2- 2 耕作規模別 戶當 所有 및 耕作面積	5
表 2- 3 農地賃借面積의 推移	6
表 2- 4 耕地所有 및 耕作規模에 따른 農家分布	6
表 2- 5 賃貸農家の 賃貸規模	7
表 2- 6 賃貸農地の 所有形態	7
表 2- 7 韓國農家の 生涯週期	13
表 2- 8 家族週期에 따른 家族의 規模와 構成	23
表 2- 9 家族週期에 따른 消費・勞動力의 變化	24
表 2-10 家族員數와 耕作面積과의 關係	25
表 2-11 1882 年과 1911 年 사이의 耕作面積의 變化	26

第 3 章

表 3- 1 相續類型 分析對象	28
表 3- 2 相續類型別 件數	30
表 3- 3 相續類型의 마을별 比較	31
表 3- 4 農地所有規模別 相續類型 比較	31
表 3- 5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	33
表 3- 6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Ⅰ型)	35
表 3- 7 子代의 職業選擇(Ⅱ型)	35

表 3- 8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Ⅱ型)	36
表 3- 9 子代의 職業選擇(Ⅲ型)	37
表 3-10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Ⅲ型)	38
表 3-11 子代의 職業選擇(Ⅳ型)	39
表 3-12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Ⅳ型)	40
表 3-13 子代의 職業選擇(Ⅴ型)	41
表 3-14 子代의 職業選擇(綜合)	42
表 3-15 世代間의 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綜合)	43
表 3-16 父代의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	44

第 4 章

表 4- 1 擴張期 農地所有變化 分析對象	46
表 4- 2 擴張期 變化類型別 農家戶數	47
表 4- 3 農家出發時 所有規模別 變化類型	49
表 4- 4 A型의 所有農地 增加	50
表 4- 5 A型의 農地減少原因	51
表 4- 6 A型의 年平均 農地增減面積	52
表 4- 7 B, C, D型의 農地減少原因	54
表 4- 8 B2, D2型의 農地擴大 制約要因	55
表 4- 9 B, C, D型의 農地增減面積	56
表 4-10 分家로 인한 減少를 고려한 變化類型	56
表 4-11 擴張期의 農地所有面積 變化	57
表 4-12 收縮期 變化類型의 農家戶數	59
表 4-13 收縮期 變化 分析農家の 年齡分布	60
表 4-14 收縮期 I型農家の 概況	61
表 4-15 收縮期 III型農家の 農地減少原因	61
表 4-16 收縮期의 年平均 農地增減	62
表 4-17 農家の 出發形態	64
表 4-18 農家出發時 農地所有面積	65
表 4-19 出發後 10年 미만 農家の 動態的 變化 區分	66

表 4-20 40 歲 이후 營農參與農家の 動態的 變化	67
-------------------------------------	----

第 5 章

表 5- 1 農家經營主의 年齡別 構成比 變化	71
--------------------------------	----

圖 目 次

第 2 章

圖 2-1	家族經濟의 生涯週期와 資産의 變化	14
圖 2-2	「F - 싸이클」에 의한 世代間的 資産承繼 模型.....	17
圖 2-3	家族週期에 따른 消費・勞動力의 變化	23

第 3 章

圖 3-1	相續類型의 區分	29
-------	----------------	----

第 4 章

圖 4-1	擴張期の 農地所有面積 變化類型	47
圖 4-2	A 型의 分類	49
圖 4-3	A 型의 農地所有面積 變化趨勢	52
圖 4-4	B, C, D 型의 分類	53
圖 4-5	收縮期の 農地所有面積 變化類型	58
圖 4-6	農家出發形態의 區分.....	63

附 表 目 次

附表 1	相續類型別 件數	73
附表 2	農地相續規模別 相續類型 比較(近郊마을)	73
附表 3	農地相續規模別 相續類型 比較(平野마을)	74
附表 4	農地相續規模別 相續類型 比較(中間마을)	74
附表 5	農地相續規模別 相續類型 比較(山間마을)	74
附表 6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近郊마을)	74
附表 7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平野마을)	74
附表 8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中間마을)	75
附表 9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山間마을)	75
附表 10	子代の 職業選擇(近郊마을)	75
附表 11	子代の 職業選擇(平野마을)	75
附表 12	子代の 職業選擇(中間마을)	76
附表 13	子代の 職業選擇(山間마을)	76
附表 14	世代間の 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近郊마을)	76
附表 15	世代間の 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平野마을)	77
附表 16	世代間の 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中間마을)	77
附表 17	世代間の 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山間마을)	78
附表 18	父代の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近郊마을)	78
附表 19	父代の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平野마을)	79
附表 20	父代の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中間마을)	79
附表 21	父代の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山間마을)	80

第 1 章

序 論

1. 調查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農業構造改善이란 과제와의 관련에서 農家經濟에 대한 이론적 관심의 하나는 농가의 動態的 變化 즉 농가자산의 축적과 감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農業, 農村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농업의 구조개선이란 명제는 수시로 논의되어 왔으며, ‘農業構造’란 용어 자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農家の 規模擴大가 중요한 처방의 하나로 의견의 접근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崔洋夫 1984, 10). 한국사회의 資本主義化에 따라 小農經濟的 農家經濟도 자본주의적 외부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구조와 행동원리, 생산성의 향상 등을 가져와야 하고 이를 위해 경영규모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농가의 動態的 變化에 대해서 기존의 이론들, 예를 들어 新古典經濟學이나 맑스主義經濟學은 경영규모에 따른 生産力의 차이로 농가간의 경쟁에서 점차 小經營이 소멸되고 大經營이 확립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¹⁾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해방 이후를 보더라도 小農經濟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농가호당 경지소유면적도 정체상태로²⁾ 規模擴大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耕作規模로 보

1)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第2章 2절 참조.

더라도 계층별 농가호수 증감에 뚜렷한 分化현상을 찾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들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농업현상의 주체인 農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특히 농가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이미 발표된 「F-싸이클 假說」³⁾에 대한 현실검증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농가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쓰인 현실자료들은 대부분 전체 농가의 규모별 호수변동에 관련된 것으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별 농가들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는가에 대한 설명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에서는 농가의 출발시부터 지금까지의 농지소유의 변동과 원인, 기타 가족상의 주요한 변화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家族制度的 要因 특히 농지의 相續制度 및 慣行이 농가의 지속적인 자산축적과 소농의 재생산에 어떻게 작용하여 왔는가를 밝힌다.

둘째, 一世代에 있어서 농지소유의 변화가 경영주의 生涯週期 (life cycle)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세째,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농가의 「F-싸이클」이 야기하는 문제상황을 규명함으로써 농지소유 및 상속제도의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를 한다.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본 조사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연구의 조사대상 4개 마을의 197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을별 조사가구수와 조사일시는 <表 1-1>과 같다.

조사표는 附錄 2에 수록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조사가구의 현재 직업과 영농출발시의 제조건 (경영주연령, 출발형태, 출발시 경지소유면적 등), 가족구성과 노동력, 직업, 거주지의 변화, 농지소유증감과 변화원인 등이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에 의하였다.

2)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호당 경지소유면적은 1959년 0.82 ha에서 1985년 0.80 ha로 감소하였다. <表 2-2>참조.

3) 崔洋夫外 (1986 b) 이것은 본 보고서 第2章의 주요내용이기도 하다.

表 1 - 1 調査家口數 및 日程

구 분	마 을 명	調査家口數	調 査 日 時
都市近郊	忠南 大德郡 杞城面 坪村 3 里	58	1987.3. 6-3.13
平 野	忠南 論山郡 彩雲面 野花 2 里	52	1987.2. 6-2.11
中 間	忠南 扶餘郡 草村面 松菊 2 里	34	1987.2.12-2.16
山 間	忠南 錦山郡 南二面 大陽 2 里	53	1987.2.23-3. 2
計	4 개 마을	197 호	

자료의 분석방법은 第 2 章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조사 자료가 統計的 標本이 라기보다는 事例研究임을 감안하여 통계적·계량적 분석보다는 類型區分에 의한 諸表分析을 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事例를 제시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료의 조사 및 분석은 農地所有面積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小農的 構造에서는 소유면적이 농가경제의 규모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규모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농업 이외의 자산(축산, 농기계, 부대시설)의 증감도 파악되어야 하나 과거조사라는 면에서 정확한 추적이 어렵고, 또 과거의 농촌에서는 농지 외의 자산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분할상속에 의한 농지소유규모의 영세화도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그 결과 경영의 분해도 일어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민 자녀들의 농지처분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세째, 본 조사연구는 1986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상속유형과 그 결과 - 즉 산업화 이후의 「F-싸이클」의 변화에 대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이는 앞으로 자료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그 양상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과제이다.

第 2 章

理論的 背景

F-싸이클 假說

1. 問題의 提起

1960 ~ 85 년 간 우리나라의 농가호수는 가장 많았던 해인 1967 년을 기준으로 할 때 66 만호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가호수의 감소는 <表 2-1>에서와 같이 1 ha 미만의 농가계층에서 비교적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規模階層別 農家構成比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큰 감소는 아니었다. 그것은 1 ha 이상의 農家階層에서도 상대적으로는 비교적 큰 감소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가호수의 감소는 지난 25 년간 거의 全 規模階層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온 일반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농가호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表 2-2>와 같이 평균적인 수준에서 戶當 耕地所有面積은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規模階層別로 본 호당 소유 면적은 전체층에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호당 경작면적은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것도 全 規模階層의 일반적인 현상일 뿐 특정계층에서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1) 이 章은 이미 발표된 崔洋夫의 (1986b)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表 2 - 1 耕作規模別 農家戶數의 變動

單位：千戶(%)

區 分		0.5 ha 미 만	0.5~1.0	1.0~1.5	1.5~2.0	2.0 ha 이 상	總農家數
1960		815 (35.0)	837 (35.9)	399 (17.1)	163 (7.0)	114 (4.9)	2,329 (100.0)
1967		919 (35.5)	829 (32.0)	446 (17.2)	219 (8.5)	173 (6.7)	2,587 (100.0)
1980		641 (29.7)	748 (34.7)	439 (20.3)	191 (8.9)	139 (6.4)	2,158 (100.0)
1985		579 (30.1)	686 (35.6)	390 (20.2)	160 (8.3)	111 (5.8)	1,926 (100.0)
연평균	'60/67	1.7	△ 0.1	1.6	4.3	6.1	1.5
	'67/80	△ 2.7	△ 0.8	△ 0.1	△ 1.0	△ 1.7	△ 1.4
	'80/85	△ 2.0	△ 1.7	△ 2.3	△ 3.5	△ 4.4	△ 2.2
	'67/85	△ 2.5	△ 1.0	△ 0.7	△ 1.7	△ 2.4	△ 1.6

資料：農水產部, 農業센서스, 各년도, 1967 년은 農林統計年報.

表 2 - 2 耕作規模別 戶當 所有 및 耕作面積

단위：ha

區 分	0.5ha 미 만		0.5 ~ 1.0ha		1.0 ~ 1.5ha		1.5 ~ 2.0ha		2.0ha 이 상		平 均	
	所有	耕作	所有	耕作	所有	耕作	所有	耕作	所有	耕作	所有	耕作
1959	0.35	0.39	0.77	0.81	1.35(소유)		1.43(경작)		2.52	2.33	0.82	0.85
1967	0.27	0.34	0.60	0.73	0.98	1.21	1.50	1.75	2.27	2.59	0.81	0.97
1980	0.26	0.31	0.59	0.74	0.93	1.22	1.31	1.71	2.13	2.57	0.81	1.03
1985	0.24	0.31	0.54	0.76	0.85	1.25	1.20	1.73	1.83	2.64	0.80	1.15

資料：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各년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農地所有 및 利用과 관련하여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는 급속한 農地의 賃貸借化와 賃貸借農家의 증가이다. 1950년의 農地改革을 통하여 일제하의 半封建的 地主-小作關係가 해체되고 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自作農制가 확립되었지만 농지임대차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현재 총경지의 30.5%인 65만 4천 ha가 賃貸借地化되어 왔다〈表 2-3 참조〉. 현재 진행되고 있는 賃貸借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임대가 경지소유면적이 큰 농가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소농도 때에 따라 농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차 현상이 전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임대인의 임대지 소유면적도 영세하여, 이러한 임대농가의 등장이 階級으로서의 地主層의

表 2-3 農地賃借面積의 推移

연 도	임 차 지 면 적 (千ha)	비 율 (%)
1960	276	13.5
1965	370	16.4
1970	408	17.6
1975	307	13.7
1980	461	21.3
1983	581	26.8
1985	654	30.5

資料 : 金聖昊 外(1984, 143).

表 2-4 耕地所有 및 耕作規模에 따른 農家分布

단위 : 戶 (%)

耕 作 規 模	所 有 規 模					計
	0.5정보미만	0.5~1.0	1.0~1.5	1.5~2.0	2.0정보이상	
0.5 정보미만	611	65	14	6	2	698(20.9)
0.5 - 1.0	349	747	22	12	3	1,133(34.0)
1.0 - 1.5	135	239	430	22	11	837(25.1)
1.5 - 2.0	42	73	79	181	16	391(11.7)
2.0정보이상	15	25	27	34	173	274(8.2)
計	1,152 (34.6)	1,149 (34.5)	572 (17.2)	255 (7.7)	205 (6.2)	3,333 (100.0)

資料 : 崔洋夫외(1983, 36) : 1982년도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3,333 호에 대한 분석임.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表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임대로 규모계층이 바뀐 173 호중 64 호 (37.0%)는 소유규모 1.0 ha 미만의 소농층이고 2.0 ha 이상은 22 호 (12.7%)에 불과하여 규모계층에 큰 관계없이 임대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대농가의 임대규모는 〈表 2-5〉와 같이 71.5%가 1,000 평 미만이었고, 3,000평 이상

表 2-5 賃貸農家の 賃貸規模

단위 : 人 (%)

賃貸規模	農 家	非 農 家	國 公 有 地	計
500 평 이하	387 (40.5)	613 (42.0)	63 (40.1)	1,063 (41.3)
501 ~ 1,000	297 (31.0)	446 (30.6)	45 (28.7)	788 (30.6)
1,001 ~ 2,000	183 (19.1)	288 (19.7)	34 (21.7)	505 (19.7)
2,001 ~ 3,000	56 (5.9)	76 (5.2)	7 (4.4)	139 (5.4)
3,001 ~ 5,000	30 (3.1)	31 (2.1)	5 (3.2)	66 (2.5)
5,001 평 이상	4 (0.4)	6 (0.4)	3 (1.9)	13 (0.5)
計	957 (100.0)	1,460 (100.0)	157 (100.0)	2,574 (100.0)

資料 : 金聖昊 外, (1984, 163).

表 2-6 賃貸農地の 所有形態

단위 : 千 ha (%)

구 분	1983	1984	1985
임차면적 (비율)	581 (26.8)	609 (28.3)	654 (30.5)
국 · 공 유 지	16 (0.7)	15 (0.7)	15 (0.7)
농 가 소 유	215 (9.9)	224 (10.4)	226 (10.5)
비농민소유 { 이농후 계속보유 이농자녀에 상속·증여 }	224 (10.3)	237 (11.0)	272 (12.7)
비농민의 농지매입	126 (5.8)	133 (6.2)	141 (6.6)

資料 : 金聖昊, (1986, 12).

을 임대한 농가는 3.5 %에 불과해 대규모 임대농가는 거의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지의 임대차가 농가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不在地主가 증가하고 있어 1985년 현재 전체 임대차면적의 63 %인 41만 3천 ha가 非農民所有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농민의 농지취득경위를 보면 買入(농지투기등)에 의한 것보다 離農後 계속 보유하거나, 離農子女가 상속·증여받아 지주화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農地賃貸借의 특징은 賃貸의 경우 大規模農家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零細地主, 不在地主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農地賃借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小規模農家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 규모계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農家戶數의 絶對的 減少와 동시에 급속한 農地의 賃貸借化 現象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현상은 어떤 相互因果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農家戶數 감소에도 불구하고 耕地規模의 擴大가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이 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농가의 동태적변화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F-사이클 가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F-사이클」이란 「農家生涯週期(farm household life cycle)」란 개념의 약칭이다.

2. 農家에 대한 既存認識의 批判

한국의 농업경제학에 있어 농가에 대한 인식은 그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新古典主義的(neo-classical)인식, 둘째가 勞力主義的인식, 그리고 小農經濟的인식이 그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학문적 입장은 어떠한 이론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농가경제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특히 이를 농가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新古典主義的 認識과 批判

新古典經濟學은 기본적으로 資本主義的 企業經濟에 대한 이론이다. 한국 농업경제학에 있어서 신고전 경제이론을 농가경제인식에 응용하는데 있어서 농업경제 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命題 1 農家經濟를 資本主義的 農企業經濟라고 보자.²⁾

이 명제는 일단 한국의 농가경제가 기업경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즉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소농경제로서의 농가경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小農經濟 그 자체는 농가경제의 低所得과 低生産性의 원인이며 농기업경제에 비하여 비능률적인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소농경제는 農企業經濟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즉 命題 1은 다음과 같은 命題 2를 전제로 하고 있다.

命題 2 農家經濟는 資本主義的 農企業經濟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명제는 농기업경제를 理想型(소농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현실의 소농경제를 문제상황으로 파악하여 ‘현실의 농가는 농기업경제라는 이념형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예외적이며 과도적인 존재’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농가경제를 지배하는, 또는 농가가 따라야 하는 경제법칙은 기업경제를 지배하는 경제법칙과 동일하며 별개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

○ 이와같은 新古典的 인식이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와 관련하여 갖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신고전적 이론은 기본적으로 농가를 ‘농기업경제’로 의제화시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소농경제적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농가간에는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가 작용하며³⁾ 그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는 자본을 축적하여 감으로써 企業的 大農으로 성장해 간다는 설명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表 2-2>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경지규모별 농가호수의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2.0 ha 이상의 농가호수는

2) 이와 같은 명제는 신고전이론을 농업에 응용, 집대성시킨 Heady에서 출발된다. Heady는 농가가 기업과 다른 측면 즉 家計消費的 측면을 지닌 경제단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생산부면만을 분리하여, 농가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eady 1952, 28).

3)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는 맑스주의적 인식과 동일하다.

1970년대 이후 크게 감소함으로써 농가경제가 기업농화되어 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며, 농가호당 경지소유 면적도 증가하지 않고 있어 농가의 자본축적도 현저히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어 이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말해 신고전적 농가경제 인식은 농가의 동태적 변화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으로 해서 이론의 客觀的 妥當性이 문제시되는 것이다.

나. 맑스主義的 認識과 批判

맑스경제학의 농가경제에 대한 인식은 일단 그것이 資本主義的 農企業經濟가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신고전경제학의 농가경제 인식보다는 현실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맑스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명제를 통하여 농가경제를 기업경제로 의제화시키고 있다.

命題 3 農家經濟는 資本主義的 農企業經濟로 될 것이다.

즉 맑스경제학은 자본주의 농업의 발전론 속에서 소농경제를 過渡的인 존재로 인식한다. 농업의 資本主義化는 역사적으로 필연인 것이며 이 과정에서 농가경제는 地主, 農業資本家, 農業勞動者로 분해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서 소농경제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生産力發展을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양극분해를 통해서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바로 역사적 필연이란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한국의 농가경제를 보는 농업경제학자들은 소농경제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농업의 大經營의 실현을 주장하며 이 점에서 본질적으로 신고전 경제학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단지, 농업의 대경영의 실현을 農企業經濟의 확립이 아니라 농가경제의 協業化(협업적 대경영)에서 찾는다는 데서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朴玄塚 1983, 129-139).

바꾸어 말하면 맑스경제학은 命題 3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신고전경제학은 命題 2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신고전경제학이 靜態的 分析에, 맑스경제학이 動態的 分析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의 차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와같이 맑스주의적 농가인식은 그를 小農經濟로 파악하면서도 결국 자본주의적 농업발전에 있어서의 과도적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고전적 농가인식이 갖는 문제점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역

사적으로 광범하게 존재해 온 현실적 소농경제를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입장에서 주장하는 農民層分解 현상도 현실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농민층 분해론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현실에서 농민층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低農產物價格, 地價上昇 등 외부적 제약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어쨌든 맑스주의적 농가인식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냄에 지나지 않는다.

다. 小農主義的 認識과 批判

한국의 농가경제를 非資本主義的 小農經濟로 인식하는 제 3의 입장이 있다. 즉 小農經濟는 자본주의적 기업농과는 달리 家族經濟로서 자가노동에 의존하면서 소규모의 토지와 노동수단을 보유 하며 半自給的 單純商品生産을 영위하는 非資本制的 경제단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소농경제의 생산활동을 지배하는 경제법칙은 ‘利潤極大化’가 아니라 絕對量主義(金俊輔, 1971, 127-134)와 低評價主義(金俊輔 65-92)이며 자본주의경제는 이렇게하여 생산된 소농경제의 잉여가치를 시장경제에 있어서 不等價交換을 통해 취득함으로써 소농경제를 보존시킨다고 파악하고 있다. 단 이때 소농경제를 지배하는 법칙(절대량주의, 저평가주의)은 소농경제의 본래적 성격이라기보다는 歷史的인 인간관계, 사회경제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사회발전과 더불어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현실의 소농적 농가경제가 자본축적을 이루어 企業農化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몰락하지도 않고 살아남는⁴⁾ 원인에 대해서는 獨占資本主義下的 저농산물가격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소농의 절대량주의, 저평가주의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시장경제가 확대되어 가면서 상품관계에 들어선 商業的 小農의 내적원리가 절대량주의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농가인식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농가경제가 절대량주의, 저평가주의의 지배를 받을만큼 빈곤한 상황에서 영세농층에서도 農地賃貸가 대량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절대량주의, 저평가주의도 자본주의의 일정단계에서 소농경제가 외부여건에 대응하는 행동양식일 뿐 농가경제의 성격과 동태적 변화원리를 설명하는 내적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내적 현실은 오히려 농업노동자화 되어 간다고 본다(金俊輔 1971, 71)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국농업경제학의 농가경제에 대한 인식은 新古典的, 맑스主義的 입장은 물론 小農經濟論까지도 농가의 資本蓄積 제약과 小農體制의 再生産, 維持라는 농가의 동태적 변화현실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는 '농가의 동태적 변화'와 관련하여 농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 유력한 대안으로 「F-사이클 假說」을 제시한다.

3. 家族經濟로서 農家經濟와 「F-사이클」

가. 家族經濟와 生涯週期

농업경제현상에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農家經濟가 갖는 아주 평범한 사실의 하나는 그것이 「家族經濟」라는 점이다. 資本의 결합인 法人으로서의 企業과는 달리 自然人的 血緣的 結合體인 家族은 그 자체가 社會的 經濟活動, 예를 들면 生産, 消費, 자산축적, 투자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家族經濟(household economy)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농가는 그와 같은 가족경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家族經濟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경제인가? 가족경제를 지배하는 어떤 經濟原理는 없는 것인가? 특히 가족경제의 動態的 變化에 관한 어떤 일반법칙은 없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家族經濟는 부부의 결합에 의한 가족의 형성과 함께 구성되며, 자녀의 출산과 성장, 分家 등 가족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고 부부의 사망으로 消滅한다.⁵⁾ 즉 가족경제의 내재적 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생각할 수 있다.

命題 하나의 家族經濟는 가족의 형성, 성장과 변화, 소멸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정한 生涯週期(life cycle)를 갖는다.

가족경제는 생물적 자연인인 家口主에 부속하여 일정한 內的週期(internal cycle)를 가지고 변화하며, 이 점에서 독자적 운동법칙(자본축적과 확대재생산)을 가지는

5) 물론 자녀에 의한 가족의 승계와 함께 가족경제도 승계되나 경제주체로서 한 세대의 가족경제는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2 - 7 韓國農家의 生涯週期

TA87-5-8

가족주기의 단계		각 단계의 특징		가구주연령*
순서	이름	단계의 시작	단계의 끝	
1	형성기	혼인	첫자녀 출생	27 ~ 29
2	확장기	첫자녀 출생	최종자녀 출생	29 ~ 34
3	완전확장기	최종자녀 출생	첫자녀 집떠남 (혼인)	34 ~ 56
4	수축기	첫자녀 집떠남	최종자녀 집떠남	56 ~ 60
5	완전수축기	최종자녀 집떠남	부부중 1명 사망	60 ~ 67
6	해체기	부부중 1명 사망	나머지 부부 사망	67 ~

* 부인이 1945 ~ 49년 사이에 출생한 가족의 경우임.

資料: 姜熙涇 외 (1982, p53, p.73).

자본이 주체가 되는 기업경제와 구별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경제는 어떠한 형태의 週期를 가지는가?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족은 그 단순한 형태(基本型)로서 6단계의 주기를 가지고 생성, 변화한다. 각 단계의 명칭과 구분 기준은 <表 2-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

가족경제의 生涯週期에 따른 각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形成期는 가구주의 혼인에 의해 새로운 가족이 창출된 시기이다. 이때 가족경제는 부모세대로부터 비교적 小規模의 자산을 상속, 증여받음으로써 출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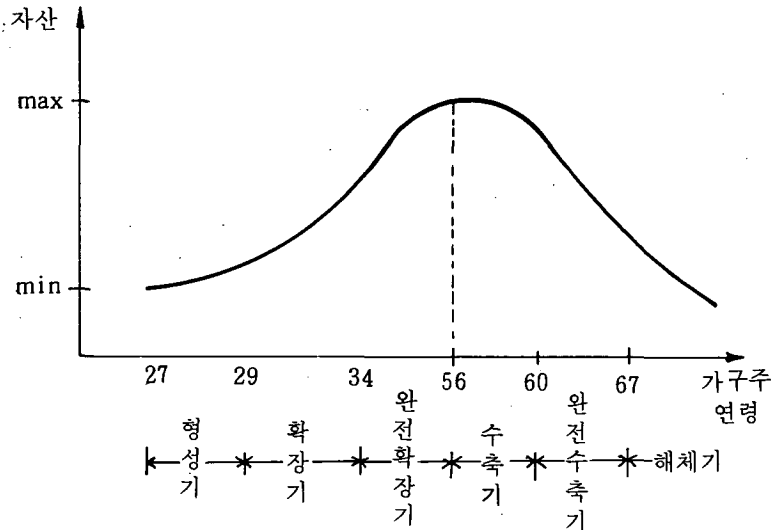
(2) 擴張期에는 자녀들의 출산으로 가족의 규모도 커지며 왕성한 노동력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의 결과 어느정도 資産의 蓄積이 이루어진다. 특히 完全擴張期の 후반에 이르면 성장한 자녀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경제의 규모도 더욱 확대된다.

(3) 收縮期에는 자녀들의 혼인에 따른 비용지출과 分家뭇의 분배로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노동력의 유출, 가구주의 老齡化로 경제활동의 규모도 축소된다. 이때, 後繼者가 있으면 第2世代 가족의 生涯週期가 시작된다.

(4) 完全收縮期과 解體期에 있어서 가족의 경제활동과 보유자산의 규모는 더욱 축소되고 마침내 부부의 사망으로 인한 家族經濟의 解體, 消滅로 결과된다. 이때 가족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다음 세대에 상속된다.

6) 단, <表 2-6>과 같은 가족의 생애주기는 부부가족(핵가족)의 경우이며, 직계가족은 이 부부가족의 승계로 파악할 수 있다.

圖 2 - 1 家族經濟의 生涯週期과 資産의 變化



이상과 같이 가족경제에 내재해 있는 生涯週期라는 命題로부터 가족경제의 자산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理論的 假說을 생각할 수 있다.⁷⁾

즉, 「가족경제」는 형성과 함께 일정량의 자산을 보유하며, 擴張期를 거치면서 자산을 축적해 가나, 收縮期를 지나면서 자산의 감소가 진행된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모든 가족경제는 生涯週期를 가지고 있고(즉 생애주기를 가지지 않는 가족경제란 없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경제의 資産 增減變化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경제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증감을 일반화시켜 <圖 2 - 1>과 같이 假說的으로 나타낼 수 있다(崔洋夫 1986, 354).

가족경제내에서 일어나는 생애주기에 따른 資産變化는 가족경제에서 일차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구주 또는 부부의 행동원리가 「家族安寧第一原則」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⁸⁾ 다시 말하면 가구원 전체의 사회적 성장과 정착, 건강,

7) 여기에서 이론적 가설이라고 한 것은 이 가설이 경험적 사실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의 검증이 본 조사연구의 목적이다.

8) 가족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가족의 安寧과 發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동원리는 기업경제의 「利潤極大化의 法則」이나 개인소비자의 「効用極大化의 法則」에 대비할 수 있다. Scott는 이를 「safety-first principle」이라고 부르고 있다. (Scott 1976, 5)

안전, 행복 등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 農家經濟와 「F-사이클」

농가경제는 전형적인 가족경제로서⁹⁾ 앞에서 설명한 가족경제의 일반적 성격을 갖는다. 즉 농가경제도 家族의 생애주기에 따른 일정한 週期를 가지며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변화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農家生涯週期(farm household life cycle)를 본 논문에서는 약칭하여 「F-사이클」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 農家生涯週期를 「F-사이클」이라고 별도로 부르는 것은 농가의 농업생산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농지의 축적과 분배가 「F-사이클」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농가가 創出, 消滅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4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농가경제는 가족경제와 같이 消費單位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農業生産活動單位라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농가경제는 토지와 약간의 생산수단을 보유하는 自作的 性格을 갖는다.¹⁰⁾ 이때,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은 노동력과 함께 농가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기업의 자본과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生活手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농가자산의 축적활동도 이윤극대화를 위한 投資活動과는 달리 가족경제의 안정과 다음 세대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농가경제도 가족경제의 행동원리인 「家族安寧第一原則」을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男兒가 分家할 때에는 새로운 가족경제의 기초로서 일정량의 농지를 배분함으로써 농가가 창출되며 기존 농가경제의 資產減少가 일어난다.

9) 농가를 家族經濟로서 파악하여 그 경제활동을 분석한 것은 차야노프(Chajnov 1925)를 시초로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제3세계의 농가를 분석하는데 가족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들(Scott 1976; Barnum 1979; Binswanger 1980)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의 분석에 있어 家計(household)의 개념을 폭넓게 도입하려는 시도(Smith 1984)도 있다. 특히 차야노프는 농가경제에 가족주기가 있음을 설명하고 經營主 年齡에 따른 勞動力과 消費慾求, 耕地面積의 變化를 분석하였다(本章 補論참조).

10) 물론 농가의 구체적인 토지보유는 역사적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며, 近代의 土地私有制가 확립된 이후에도 地主, 小作農등 自作農의 범주를 벗어나는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직접적 생산자로서 농가의 자작적 성격은 그 理念型일 뿐만 아니라 歷史的, 空間的으로도 가장 광범위하게 지속되어온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농가는 가족의 안녕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그 가장 중요한 生産手段인 農地도 이 원칙 아래에서 蓄積되고 分配됨으로써 「F-사이클」에 따른 변화를 겪는다. 즉 농가경제의 농지를 포함한 자산도 결국 〈圖 2-1〉과 같이 생애주기에 따라 동태적인 증감변화를 겪는다.

4.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

가. 「F-사이클」과 農家資産의 世代間 承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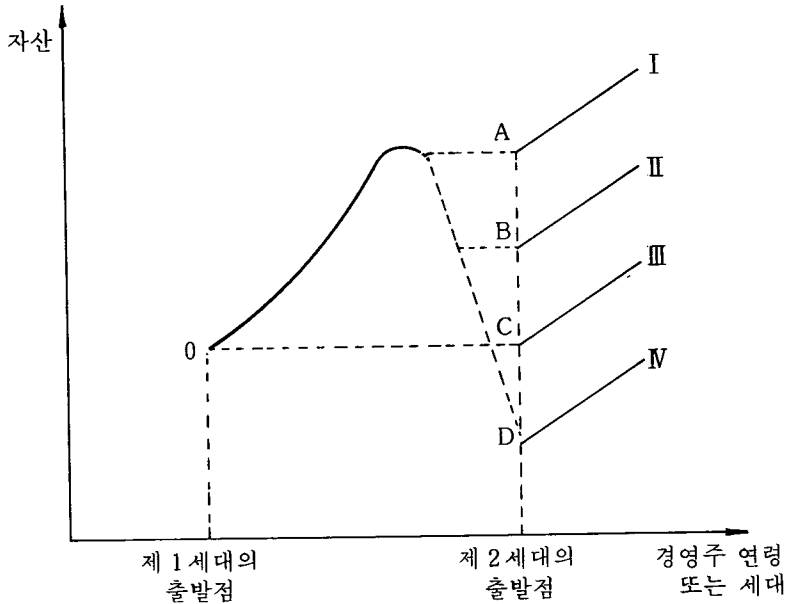
농가경제를 지배하는 내적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F-사이클」은 한국의 농업에 어떤 현상을 일으켜 왔는가? 産業化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모확대의 정제, 임대차와 부채지주의 증가 등의 현상과 「F-사이클」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F-사이클」이 농가경제의 動態的 變化에 작용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화 이전의 閉鎖模型, 즉 農耕社會에서의 「F-사이클」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F-사이클」이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서 갖는 첫번째 의미는 그것이 농가경제의 자산축적, 예를 들면 農地所有規模의 확대¹¹⁾를 제약하는 내재화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화 이전의 農耕社會에 있어서 자녀들은 대체로 마을 내에서 자라며 교육받고, 어느정도 노동력을 갖게 되면 부모와 같이 영농에 참여하고, 결혼하여 새로운 농가를 創出하여 부모대를 승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농가의 경제활동규모도 커지며 자산도 증가하는 「F-사이클」상의 확장단계를 가진다. 그러나 자녀들이 분가하여 별도의 독립가족을 이룸에 따라 생활수단으로서의 농지의 分割相續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것은 새로운 농가의 창출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第1世代에서 축적된 농가자산은 다음 세대로 그 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分割相續

11) 농가자산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196년에는 총자산의 %였으며 1986년에도 호당 2,048만원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하고 있다.

圖 2 - 2 「F-사이클」에 의한 世代間的 資産承繼 模型



이라는 縮小의 과정을 거침으로서 동태적으로 보았을 때 농가경제의 지속적인 資産蓄積은 제약을 받게 된다.

농가의 世代承繼過程에서 진행되는 축적된 자산의 分割相續을 정리하면 <圖 2-2>와 같이 4가지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제 2세대 「F-사이클」의 출발점은 제 1세대 자산의 극대점인 A부터 D까지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규모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A에서 출발한 I型에 있어서는 2代에 걸친 자산의 지속적 축적이 성립되지만, IV型에서는 제 2세대 출발시점의 자산규모가 오히려 제 1세대 보다 축소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제 2세대 농가경제의 자산규모는 출발시점의 자산규모의 차이가 出發條件(initial condition)의 농가간 차이를 가져 오기는 하지만 「F-사이클」의 지배속에서 다시 擴張과 縮小라는 일반적인 과정을 반복한다.¹²⁾ 특히 제 2세대 「F-사이클」의 출발

12) 이 과정에서 I, II型의 농가가 자산규모의 축소를 가져오고, III, IV型의 농가가 오히려 자산규모가 커질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점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가족의 인구적 요인 즉 자녀수와 社會制度 및 慣習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1子相續制나 長子相續制 또는 자녀간 分割相續制 등이 그것이다. <圖 2-2>의 I型은 농가자산을 한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이며 이때 농가자산은 지속적인 축적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속에 관한 보편화된 사회적 관습과 제도는 I型보다는 II, III, IV型을 만들어내는 分割相續制가 지배하여 왔다. 따라서 제 1세대에서 축적된 농가의 자산은 제 2세대로의 承繼過程에서 필연적으로 분할과정을 거침으로써 농가경제의 지속적인 자산축적의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가경제의 자산(토지)소유규모의 정태현상도 결국은 「F-싸이클」의 지배를 크게 받은 결과의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농가에 있어 지난 25년동안 호당 경지소유면적에 큰 변화가 없고, 자산축적에 의한 資本主義的 企業農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세소농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어 온 내적 원인을 이 「F-싸이클」의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농가경제가 농업생산이라는 경제활동의 主體이면서도 企業經濟와 같이 지속적인 자본축적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F-싸이클」의 지배하에 있는 家族經濟라는 사실 때문인 것이다.

더우기 離村의 가능성과 인구의 이동성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농경사회와 같은 局地的인 閉鎖經濟에 있어서 새로 형성된 제 2세대의 농가들은 부모세대로부터 토지 등의 자산을 분할상속 받아 독립가족을 이룸으로써 상대적으로 소규모에서 영농을 시작한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F-싸이클」은 零細小農을 구조적으로 再創出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金春棟 1983).

나. 産業化에 따른 「F-싸이클」의 繼絶과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

한국의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가경제는 1970 년대의 급속한 産業化過程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崔洋夫, 吳乃元 1986 a, 21-30)

산업화가 농가경제에 미친 가장 큰 영향중 하나는 都市・工業部門의 성장에 따른 농가자녀들의 離農이다. 급속하게 확대되는 도시・공업부문은 성장에 필요한 勞動力의 供給源을 농촌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농가의 젊은 자녀들은 공업부문에 취업하거나 혹은 그 전단계인 近代의 教育을 받기 위해 농촌을 떠난다. 이와같이 농가의 자

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촌은 농가의 家族的 性格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결혼을 통하여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농가자녀들의 이촌은 부모와 자녀들간에 생활공간의 장소적 분리를 가져오고 그것은 「1家族 2家口」(崔洋夫, 1986, 356-359), 또는 「1家族 多家口」(吳乃元 외 1986, 43-49)라고 부를 수 있는 家族類型을 만들어 낸다.

자녀의 이촌과 그에 따른 「1家族 多家口」 현상은 농가의 자산축적에 새로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농경사회에서는 성장한 모든 자녀가 영농에 참여함으로써 擴張期에 있어서 농가자산의 증가가 가능하였지만, 산업화에 따른 教育年數의 증가와 도시로의 이농으로 자녀의 영농참여가 감소하여 勞動力不足을 야기시키고, 教育費負擔과 자녀의 都市定着 지원을 위한 자산의 유출로 「F-사이클」에 따른 농가자산의 확장에 제약이 가해진다.

다른 한편으로 농경사회에서 농가는 대부분의 자녀가 농업을 직업으로 부모를 계승함으로써 農地承繼를 통한 農家の 創出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가의 젊은 자녀들이 도시에서 가구를 형성하고 도시정착이 진행되면서, 농촌에 남아 있는 부모들의 老齡化에 따라 농업을 승계할 營農後繼者가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F-사이클」의 世代間的 斷絶을 의미한다.

최근 농가호수의 감소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노령화와 자녀이촌에 따른 「F-사이클」의 斷絶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농층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教育機會를 가졌기 때문에, 영세농층의 자녀는 물려받을 농지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각각 농업을 떠나, 「F-사이클」이 단절됨으로써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농가호수의 절대적인 자연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다(表 2-1 참조). 다시말하면 농가자녀들의 이촌과 도시정착은 농촌내에서 농가의 새로운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며 농가의 집단적인 이농과 함께 農家戶數의 減少를 더욱 촉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농가자녀들의 이촌과 도시정착, 농촌에 남아있는 부모들의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 그리고 그에 따른 「F-사이클」의 斷絶이라는 현상은 결국 농촌의 부모(農家)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비농업부문에 취업하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非農民)들이 분할 상속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상속을 통한 非農民의 農地所有가 사회적으로 합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949년에 제정된 農地改革法과 현재의 農地去來制度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구입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비농민자녀에의 相續, 贈與는 民法上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민자녀가 그것을 팔지 않고 보유하거나, 혹은 팔려고 해도 재촌농민의 구매력이 충분하지 못할 때, 不在地主로 되고 그에 따른 임대차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表 2-6>에서 본 바와 같이 비농민지주의 농지취득 경위가 買入(농지투기등)에 의한 것보다 이농한 비농민자녀에 대해 상속, 증여한 경우가 많고 이것이 총 임대차면적의 41.6%에 달하고 있는 사실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농가경제에 작용하고 있는 「F-사이클」은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농가자녀들의 이촌과 도시정착으로 세대간에 단절되면서 농가호수의 전체층적 감소, 비농민자녀에 의한 농지상속과 그에 따른 영세 不在地主의 증가, 農地質貸借의 擴大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민자녀들의 농지보유선호 경향과 재촌농민들의 실질적인 농지구매력의 부족은 농가호수의 절대적 감소 속에서도 호당 농지소유규모의 증대보다는 오히려 임대차지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檢證假說

본 조사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에 입각하여, 「F-사이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가설을 현실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假說 1 과거 전통농촌에 있어서 농가의 일반적인 상속관행은 多子分割相續이었다.

왜냐하면, 농가는 분가하여 독립가구를 이루는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家計의 안정을 도모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從屬假說 따라서, 농가의 자산축적은 代를 잇는 상속과정에 의해 제약되고 새로 출발하는 농가는 소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는 假說 1로부터 추론된 것으로 分割相續이 소농이 재생산되는 중요한 내적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假說 2 農家の 농지소유규모는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경영주 연령에 따라 <圖 2-1>과 같은 사이클을 갖는다.

從屬假說 그러나, 産業化의 영향으로 資産 변화의 사이클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왜냐하면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확장기의 자산축적을 제약하는 요인은 가족의 질병이나 개인적 특성(낭비, 나태) 등에 지나지 않았으나 산업화에 따른 고등교육지출의 확대에 의한 教育費負擔, 동력의 도시유출로 농가자산의 규모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화에 따라 농가의 자녀들이 농업을 승계하지 않고 도시비농업부분에 취업함에 따라 수축기의 형태가 달라진다. 즉 단계적 분할상속에 의한 승계과정 대신에 「F-사이클」의 단절 현상이 일어난다.

本 報告書에서는 가설 1은 第3章에서, 가설 2는 第4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補論 차야노프의 農家 家族週期에 대한 理論

20 C 초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차야노프(A. V. Chajanov)는 1923년 독일어판 「農民經濟學: 農業에 있어서 家族經濟의 理論」(Die Lehre von der Bäuerlichen Wirtschaft)과 그 러시아어 개정증보판인 「農民經濟의 組織」(Peasant Farm Organization)을 발간하여 農民經濟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이론을 발표하였다.

利潤을 추구하는 資本制의인 企業農과는 달리 家族經濟로서의 농민경제의 특성을 강조한 이 저서는 大農·小農優越論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된다. 19 C 말부터 카우츠키(Kautzky 「農業問題」(Die Agrafrage), 1899)와 다빗(David)으로 대표되는 논쟁은 30년이나 계속되었지만, 어느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았었고 더욱 농업의 현실도 대농우월론의 주장처럼 진행되지도 않았었다. 여기에서 차야노프는 「금일에 있어서 大經營형태가 농업생산요소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소경영보다 현저하게 우월하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농업계를 관찰하면, 농민의 소경영은 소멸하기는 커녕 최근 10여년간 그 지위를 공고히 하여온 것을 목격하는 경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 그 근본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보면 量的 標準에 따라 대경영과 소경영을 비교,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본질을 달리하는 2종류의 경제—資本家的 經濟와 賃勞動者 없는 經濟—의 생존능력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차야노프는 小農을 資本家的 大經營과 구분하여 ‘賃勞動者 없는 經濟’로 규정하고, 그것이 농민적 가족경제이기때문에 우선 경제를 영위하는 家族 자체의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며, 가족의 크기와 구성이 경제활동의 규모를 결정짓는

다는 가설의 검토로부터 분석을 시작한 것이다.

차야노프의 이러한 이론구성은 사실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당시 러시아의 農業經營實態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調查研究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소위「經營組織 및 生産學派」(Organization and Production School)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차야노프의 이론중 家族週期和 耕地規模와의 관계는 日本에서 横井時敬에 의해 비판적으로 수용되었으며, 家計와 生産單位의 복합체로서 家族經濟의 행동원리가 企業的 大農과는 다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Nakajima 등에 의해 계승·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본래의 문제제기가 퇴색된 결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본 조사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차야노프의 農民家族週期理論의 전개과정을 따라 설명한다.

차야노프는 어느 생산과정에서도 노동력이 중요한 기술적 요소이며, 家族農은 고용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의 구성과 그 활동은 가족구성과 크기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가족이 小農經營組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가족구성이 그 경제활동의 최대 및 최소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경제활동의 최대 규모는 이 (가족)노동력이 최대로 활용될 때의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고, 최소 규모는 가족의 최저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고 하여 가족의 분석에 있어 勞動力과 消費의 양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농가의 노동력과 소비는 農民家族의 形成에서부터 그 발달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여 하나의 週期的 曲線을 그리며 이에 따라 농가의 경제활동의 크기도 변화한다는 것이 차야노프의 농민가족주기 (peasant farm family cycle)이론이다.

차야노프의 농민가족주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표준적 농민가족을 상정하면 경영주가 25세때 결혼을 하여 가족이 형성되며 그후 매 3년마다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규모(size)는 확대된다. 이 과정을 모형화한 것이 <表 2-8>로 가족주기의 26년째에는 경영주 부부를 포함하여 11명의 크기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가족 규모와 구성의 변동에 따른 가계의 소비와 노동력의 크기 변화를 정리한 것이 <表 2-9>와 <圖 2-3>이다. <圖 2-3>에서 W곡선은 農家經

表 2 - 8 家族週期에 따른 家族의 規模와 構成

가족주기 (年數)	경영주 연령	부인 연령	자녀의 연령									가족원수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		25	20	—	—	—	—	—	—	—	—	2
2		26	21	1	—	—	—	—	—	—	—	3
3		27	22	2	—	—	—	—	—	—	—	3
4		28	23	3	—	—	—	—	—	—	—	3
5		29	24	4	1	—	—	—	—	—	—	4
6		30	25	5	2	—	—	—	—	—	—	4
7		31	26	6	3	—	—	—	—	—	—	4
8		32	27	7	4	1	—	—	—	—	—	5
9		33	28	8	5	2	—	—	—	—	—	5
10		34	29	9	6	3	—	—	—	—	—	5
11		35	30	10	7	4	1	—	—	—	—	6
12		36	31	11	8	5	2	—	—	—	—	6
13		37	32	12	9	6	3	—	—	—	—	6
14		38	33	13	10	7	4	1	—	—	—	7
15		39	34	14	11	8	5	2	—	—	—	7
16		40	35	15	12	9	6	3	—	—	—	7
17		41	36	16	13	10	7	4	1	—	—	8
18		42	37	17	14	11	8	5	2	—	—	8
19		43	38	18	15	12	9	6	3	—	—	8
20		44	39	19	16	13	11	7	4	1	—	9
21		45	40	20	17	14	11	8	5	2	—	9
22		46	41	21	18	15	12	9	6	3	—	9
23		47	42	22	19	16	13	10	7	4	1	10
24		48	43	23	20	17	14	11	8	5	2	10
25		49	44	24	21	18	15	12	9	6	3	10
26		50	45	25	22	19	16	13	10	7	4	11

圖 2 - 3 家族週期에 따른 消費·勞動力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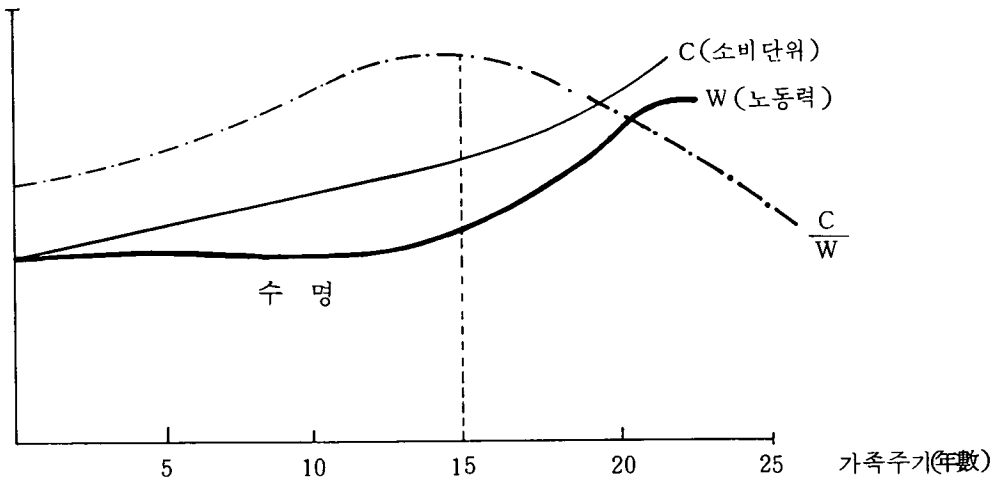


表 2 - 9 家族週期에 따른 消費・勞動力의 變化

가족주기 (年數)	경영주 부 부	자				녀				총 가족원		소비／노동력	
		1	2	3	4	5	6	7	8	9	소비단위	노동력	비 율
1 ...	1.8	—	—	—	—	—	—	—	—	—	1.8	1.8	1.00
2 ...	1.8	0.1	—	—	—	—	—	—	—	—	1.9	1.8	1.06
3 ...	1.8	0.3	—	—	—	—	—	—	—	—	2.1	1.8	1.17
4 ...	1.8	0.3	—	—	—	—	—	—	—	—	2.1	1.8	1.17
5 ...	1.8	0.3	0.1	—	—	—	—	—	—	—	2.2	1.8	1.22
6 ...	1.8	0.3	0.3	—	—	—	—	—	—	—	2.4	1.8	1.33
7 ...	1.8	0.3	0.3	—	—	—	—	—	—	—	2.4	1.8	1.33
8 ...	1.8	0.3	0.3	0.1	—	—	—	—	—	—	2.5	1.8	1.39
9 ...	1.8	0.5	0.3	0.3	—	—	—	—	—	—	2.9	1.8	1.61
10 ...	1.8	0.5	0.3	0.3	—	—	—	—	—	—	2.0	1.8	1.61
11 ...	1.8	0.5	0.3	0.3	0.1	—	—	—	—	—	3.4	1.8	1.66
12 ...	1.8	0.5	0.5	0.3	0.3	—	—	—	—	—	3.4	1.8	1.88
13 ...	1.8	0.5	0.5	0.3	0.3	—	—	—	—	—	3.5	1.8	1.88
14 ...	1.8	0.5	0.5	0.3	0.3	0.3	—	—	—	—	3.1	1.8	1.94
15 ...	1.8	0.7	0.5	0.5	0.3	0.3	—	—	—	—	4.1	2.5	1.64
16 ...	1.8	0.7	0.5	0.5	0.3	0.3	—	—	—	—	4.2	2.5	1.64
17 ...	1.8	0.7	0.5	0.5	0.3	0.3	0.1	—	—	—	4.8	2.5	1.68
18 ...	1.8	0.7	0.7	0.5	0.5	0.3	0.3	—	—	—	4.8	3.2	1.50
19 ...	1.8	0.7	0.7	0.5	0.5	0.3	0.3	—	—	—	5.1	3.2	1.50
20 ...	1.8	0.9	0.7	0.5	0.5	0.3	0.3	0.1	—	—	5.7	3.4	1.50
21 ...	1.8	0.9	0.7	0.7	0.5	0.5	0.3	0.3	—	—	5.7	4.1	1.39
22 ...	1.8	0.9	0.7	0.7	0.5	0.5	0.3	0.3	—	—	6.0	4.1	1.39
23 ...	1.8	0.9	0.9	0.7	0.5	0.5	0.3	0.3	0.1	—	6.6	4.3	1.39
24 ...	1.8	0.9	0.9	0.7	0.7	0.5	0.5	0.3	0.3	—	6.6	5.0	1.32
25 ...	1.8	0.9	0.9	0.7	0.7	0.5	0.5	0.3	0.3	—	6.9	5.0	1.32
26 ...	1.8	0.9	0.9	0.9	0.7	0.5	0.5	0.3	0.3	0.1	6.9	5.2	1.32

* 소비·노동력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소비·노동력이 각각 0.9
- 미성년의 경우 소비단위는 0세대 0.1, 1~6세 0.3, 7~12세 0.5, 13~17세 0.7이고 노동력 단위는 13~17세때만 0.7로 평가함.

濟活動의 上限을 C곡선은 下限을 나타낸다.¹³⁾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農民家族의 상태는 그 가족의 經濟活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우선 農家の 經濟活動量(耕作面積을 지표로 삼

13) 물론 그래프상으로는 항상 C곡선이 W곡선보다 위에 있어 이 표현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각각의 상대적 크기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消費/勞動比率이 최대인 14년째의 비율인 1.94가 消費(최저수준의 소비) 1단위와 勞動(최대강도의 노동) 1단위의 경제활동크기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表 2 - 10 家族員數와 耕作面積과의 關係

Samara 지 방			Vyatka 지 방		
가족원수	경 작 면 적		가족원수	경 작 면 적	
	계 산 치	관 측 치		계 산 치	관 측 치
4.4	2.0	1.8	3.5	4.8	4.5
5.2	4.4	4.5	4.4	8.8	8.9
6.1	7.6	7.5	5.3	12.7	12.6
6.9	10.7	10.5	6.2	16.7	16.6
7.5	14.7	13.5	7.2	21.1	21.0
8.2	17.3	17.4	8.6	27.2	27.0
9.4	24.3	24.1	10.7	36.3	36.5
10.9	34.5	34.1			

음)과 家族의 크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統計資料를 분석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Samara 지방과 Vyatka 지방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양 변수 사이의 관계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text{Samara 지방: } y = 0.36x^2 - 0.52x - 2.6$$

$$\text{Vyatka 지방: } y = 4.38x - 10.5$$

단 x : 가족원수

y : 경작면적 (desyatinas)

이 함수식에 의한 計算値와 실제 觀測値와의 비교는 <表 2 - 10>과 같으며 양변수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14) 이 자료는 개별 농가의 데이터가 아니며 수만농가의 경우를 grouping하여 분석한 것이나 이 구체적 그룹 구분의 기준 및 표본수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면, 耕作規模와 가족원수는 어느 것이 독립변수이고 어느 것이 종속변수인가? 차야노프는 耕作規模가 家族員數를 규정한다는 假定을 통계분석을 통하여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耕作規模가 독립변수라면 농가의 출발시에 耕作面積이 큰 농가는 그 규모를 지속해야 할 것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表 2-11 참조) 家援員數가 耕作規模에 의해 규정된다면, 小農에서의 유아사망율이 大農보다 커야 하고 어린애의 비율도 낮아야 하나 통계자료는 이를 부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차야노프는 가족의 크기가 耕作面積을 결정하며, 가족의 크기는 家族의 形成年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農家の 經濟活動의 크기는 家族의 生成・變化에 따라週期的으로 변화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表 2 - 11 1882年과 1911年 사이의 耕作面積의 變化

단위 : %

1911 年 1882 年	0 ~ 3	3 ~ 6	6 ~ 9	9 ~ 12	12 desyatinas 이 상	計
0 ~ 3	28.2	47.0	20.0	2.4	2.4	100.0
3 ~ 6	21.8	47.5	24.4	8.2	2.14	100.0
6 ~ 9	16.2	37.0	26.8	11.3	2.4	100.0
9 ~ 12	9.6	35.8	26.1	12.4	16.1	100.0
12 desyatinas 이 상	3.5	30.5	28.5	15.6	21.1	100.0

* Chernigov 지방 Surazh 군에 대한 센서스 자료임.

第 3 章

農地の相續過程과 小農의 創出

第 2 章의 假說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農家は 家族經濟로서 경영주의 生涯週期에 따라 동태적 변화과정을 겪으며, 경영주의 노쇠와 자녀의 성장·분가에 따라 農家の 資産은 자녀세대에 相續된다. 본장에서는 農家에서 資産相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一子相續인가 아니면 多子分割相續인가를 실증자료에 의해 검토해 보고 이러한 상속과정이 農家の 農地所有規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1. 世代間の 農地相續形態

가. 分析對象

총 조사대상 197 호중 상속유형의 분석대상 가구수는 151 호이다. 父代에 영농사실이 없이 當代에 農家를 創設하였거나 당대에 영농사실이 없는 非農家は 당연히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상속유형의 분석은 이 151 호를 중심으로 이들의 父代에서 當代로의 農地相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 졌는가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151 호중에서는 형제가 별도의 독립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어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면 父代에서의 총 상속 케이스는 130 件이 된다.

表 3 - 1 相續類型 分析對象

단위: 戶

TA87-5-1

區 分	都市近郊	平 野	中 間	山 間	計
總 戶 數	58	52	34	53	197
分 析 對 象 戶 數	40	41	29	41	151
分 析 除 外 戶 數	18	11	5	12	46
當 代 農 家 創 設	11	8	4	7	30
非 農 家 ¹⁾	3	3	1	1	8
其 他 ²⁾	4	0	0	4	8
相 續 件 數	35	34	25	36	130

- 1) 家口出發 이후 營農 사실이 없는 가구를 가리키며, 現在는 老齡化 등으로 非農家이더라도 과거 營農에 종사한 가구는 分析對象에 포함시켰음.
- 2) 調査對象者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하여 family profile의 추적이 어려운 가구.

나. 相續類型的 區分

民法상 재산상속의 형태는 單獨相續과 共同相續으로 나뉘어지나(民法 第1000條~第1003條) 본 調査研究에서는 分析의 目的상 農家相續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아들(상속인)이 1명인가 여러명인가 그리고 아들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한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는가 아니면 2명 이상이 分割하여 상속하였는가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리고 상속유형의 용어도 상속인의 法的地位의 개념인 單獨相續, 共同相續 대신에 실제농지가 자녀들간에 어떻게 상속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 一子相續과 分割相續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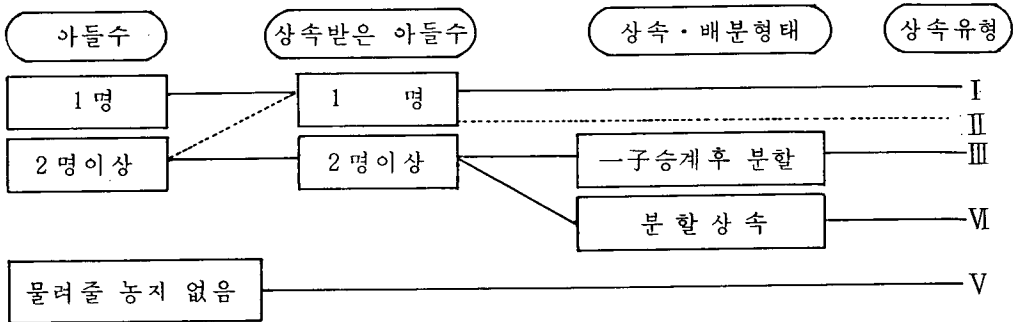
〈圖 3-1〉과 같은 상속유형의 구분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구분은 민법상의 상속권의 유무를 떠나 실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민법상의 共同相續인이라 할지라도 실제 한 아들이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一子相續(類型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財産相續은 農地에 한정하였다. 이것은 본 分析의 목적이 상속과정을 통한 農地所有의 細分화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며 과거의 농가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資産이 農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째, 民法上에서는 자녀중 딸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나 관행상 딸은 출가시 일 정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조사농가에

圖 3 - 1 相續類型的 區分



있어서 딸에게 農地 자체를 상속시켜 준 경우는 없으며 단지 소량의 농지를 판매하여 출가비용으로 충당한 경우는 있다.¹⁾ 마찬가지로 被相續人의 배우자(妻)도 상속권이 있으나 직접 상속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本 分析이 世代間의 承繼問題인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네째, 일반적으로 아들들이 分家해 나갈 경우에는 農地를 사실상 증여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에 증여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法상의 소유권이전(증여)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고 被相續人의 死亡후에 상속받는 경우도 있으나 本 分析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시하여 증여사실이 일어난 시점부터 相續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分割相續이라 하더라도 被相續人이 子女들이 어릴 때 사망한 경우에는 一자가 일괄 승계(또는 상속)받아 관리하다가 兄弟들이 성장해 分家함에 따라 일정량씩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어 이는 별도의 유형 III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별도로 구분한 것은 일괄승계후 형제들에게 분할하기까지 農地所有面積에 일어나는 변화가 분할형태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분류방식에 따라 사례지역 가구에 있어서 상속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表 3-2>와 같다. 父代에 農地가 있어서 子代에 상속해 준 108 戶중에서 67.6%인 73 戶가 一子相續을 하였고 35 戶는 分割相續을 하여 가정과는 달리 一子相續이 지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아들이 1명이기 때문에 일자상속을 한 I형을 제외하면 77 戶중 35 戶(45.5%)가 분할상속으로 조사마을에 있어서 일자상

1) 이러한 사실은 農地가 그동안 家産으로서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는 “出嫁外人”에게는 분할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온 때문이다.

表 3 - 2 相續類型別 件數¹⁾

TA87-5-2

단위 : 件 (%)

區 分	都市近郊	平 野	中 間	山 間	計
獨子의 一子相續(I)	9 (30.0)	3 (12.0)	6 (27.3)	13 (41.9)	31 (28.7)
多子의 一子相續(II)	11 (36.7)	9 (36.0)	9 (40.9)	13 (41.9)	42 (38.9)
一子承繼 후 分割(III)	3 (10.0)	5 (20.0)	2 (9.1)	0 (-)	10 (9.3)
多子 分割 相續(IV)	7 (23.3)	8 (32.0)	5 (22.7)	5 (16.1)	25 (23.1)
計 ²⁾	30 (100.0)	25 (100.0)	22 (100.0)	31 (100.0)	108 (100.0)
無 相 續 (V)	5	9	3	5	22

1) 자세한 상속유형은〈附表 1〉참조.

2) 計는 無相續의 경우를 제외한 것임.

속과 분할상속이 비슷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속유형의 차이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관행적 상속유형(理念型)은 무엇인가? 만약 그 이념형이 분할상속이고 民法의 규정도 分割相續(共同相續, 諸子均分相續)이라면 一子相續은 어떤조건 of 농가에서 발생하는가? 또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 地域別, 階層別, 時期別 相續類型의 差異

여기에서는 一子相續의 조건인 I型을 제외하고 II, III, IV型에 대해서만 지역, 계층, 시기별로 상속유형이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지역별(마을별)로 보면 平野, 近郊, 中間, 山間마을의 순으로 분할상속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表 3-3〉.

기존의 사례연구²⁾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都市地域이 農村地域보다 분할상속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近代의 個人本位思想과 그에 따른 權利意識 때문이라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사례지역에서 상속유형의 차이는 위 요인외에도 農地 生産性과 地價가 平野마을이 월등하게 높고 山間마을이 낮은 것도 작용했으리라 보인다.

2) 예를 들어 金容漢 (1974, 6).

表 3 - 3 相續類型의 마을別 比較

TA87-5-3

단위: 件(%)

區 分	都市近郊	平 野	中 間	山 間	計
一 子 相 續 (Ⅲ)	11 (52.4)	9 (40.9)	9 (56.3)	13 (72.2)	42 (54.5)
分 割 相 續 (Ⅲ, Ⅳ)	10 (47.6)	13 (59.1)	7 (43.7)	5 (27.8)	35 (45.5)
計	21 (100.0)	22 (100.0)	16 (100.0)	18 (100.0)	77 (110.0)

表 3 - 4 農地所有 規模別 相續類型 比較

TA87-5-4

단위: 件(%)

區 分	0.5ha미만	0.5~1.0	1.0~1.5	1.5~2.0	2.0ha이상	平均所有 面積(件)
一 子 相 續 (Ⅲ)	23 (82.1)	16 (72.7)	2 (13.3)	0 (-)	1 (14.3)	1,660
分 割 相 續 (Ⅲ, Ⅳ)	5 (17.9)	6 (27.3)	13 (86.7)	5 (100.0)	6 (85.7)	3,932
計	28 (100.0)	22 (100.0)	15 (100.0)	5 (100.0)	7 (100.0)	2,693

* 마을별로는 <附表2> ~ <附表5> 참조

農地の 상속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被相續人(父代)의 農地所有規模이다. <表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ha 미만의 零細小農層에서는 일자상속이 대부분이고 1.0 ha 이상의 中大農層에서는 분할상속이 지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사례연구³⁾에서의 결과와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第2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農家は 家族經濟로서 家計의 安定과 發展을 그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위이다. 따라서 子女세대의 새로운 家口의 출발은 父세대 家계 的 承繼와 발전으로 파악되며 家口의 安定적 유지에 필요한 일정량의 농지를 상속시켜 준다. 이러한 연유로 아들이 여러명일 경우 諸子分割相續이 일반적 관행이 되어 왔지만, 당대의 불려줄 농지가 소규모여서 분할로 인해 그 규모가 극히 영세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분할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농촌에 있어서 평균적인 농가의

3) 1960년대 초반 공주군에서 실시된 한 실태조사에서도 약 3,000 坪을 기준으로 분할상속과 일자상속의 경향이 구분됨을 보여 주고 있다 (金壽洙 1961, 85-89).

규모가 3,000 坪정도라 할 때 상속농지면적이 그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한 아들에게만 농지를 상속시키고 다른 아들들은 非農業部門으로 나가거나 또는 無土地農家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여진다. 즉 農地의 分割相續에는 한계가 있어 宗家が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다.⁴⁾

이와 같은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농지의 규모가 2.0 ha 이상이면서도 일자상속을 한 1 戶와 0.5 ha 미만이면서도 분할상속을 한 5 戶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상속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농가(中間마을, 30 번가구)는 이 마을의 지주집안으로 4 남중 장남이다. 父代의 최대소유면적은 19,300 坪으로 이중 11,000 坪은 농지개혁시 매수되었고 상속받은 면적은 9,900 坪이다(1953년, 그 사이에 큰집 논 1,600 坪 물려받음). 동생 3명중 한명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후 거주하고 있으며, 두명은 국내에서 대학을 마친후 미국으로 이민가 살고 있다. 따라서 동생들에게 직접 農地는 상속시켜 주지 않았지만 교육비, 이주비 등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이로 인해 1,600 평 판매).

상속면적이 0.5 ha 미만이면서도 분할상속을 한 5 戶는 모두 近郊마을(23, 37, 39, 44, 52 번가구)의 농가로 이 마을은 비교적 地價가 높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살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면 상속받은 형제들은 농지를 팔거나 在村형제에게 맡기고 이농하여 父代 5 戶에서 12명이 상속을 받았으나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가구는 6 戶로, 결국 분할상속을 하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상속인은 1 戶당 1 명씩에 불과하다.

한편, 農地의 상속관행은 그 시기에 따라 經濟, 社會的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전체의 産業化에 따른 都市工業部門의 발달로 非農業就業機會가 확대되

-
- 4) 이 현상은 우리의 전통적인 “代를 잇는다”는 의식과도 같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金曉殊 1961). 실제 조사과정에서 일자상속의 이유를 물을 때 “큰 아들이 잘 되어야 제사를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 장남이 父를 승계하던 때와는 달리 비농업부분으로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반드시 장남이 승계하지는 않게 되었다. 사례농가중 多子중 1子相續인 II형 42 件에서 장남이 상속받은 것은 31 件(73.8%)이다. 나머지 11 件중 장남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차남이하가 상속받은 경우는 2 件으로 이는 가족 내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어 農地相續의 機會費用이 증가하며 이는 一子相續의 경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농업종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점차 악화되고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직업선택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자녀들이 이주하게 되고 이들의 농지에 대한 상속요구는 상대적으로 감퇴한다. 특히 이주자녀들은 중등이상의 敎育을 받고 이 경우 교육비부담으로 농지상속을 갈음한다는 것이 일반적 의식이라 볼 수 있다.

둘째, 農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들도 일정한 持分(예: 민법상의 비율)을 요구하게 된다(金容漢 1974, 6). 특히 앞으로 전자녀가 이주하여 非農家化하는 경우에는 농사짓는 아들, 또는 장남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여질 수 있다.

결국 위의 두가지 요인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기별로는 상속관행의 차이에 대해 一義的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表 3 - 5>는 시기별 상속형태의 비교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분할상속의 비율이 약간 높아지나 시기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表 3 - 5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

TA87-5-5

단위: 件(%)

區 分	1945년 이전	1945-'59	1960-'69	1970-'79	1980년 이후
一子相續(Ⅱ)	4(57.1)	12(60.0)	14(53.8)	9(50.0)	3(50.0)
分割相續(Ⅲ, Ⅳ)	3(42.9)	8(40.0)	12(46.2)	9(50.0)	3(50.0)
計	7(100.0)	20(100.0)	26(100.0)	18(100.0)	6(100.0)

*마을별로는 <附表 6>~<附表 9> 참조.

2. 相續을 통한 小農의 創出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 農村에서는 中大農層에서는 分割相續이 관행적이었고 1.0 ha미만의 零細小農層에서는 一子相續이 일반화되었었다. 그러면 이러한 상속

관행은 제 2세대 농가의 農地所有規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즉 제 1세대에서 축적된 농지를 승계 또는 분할받은 제 2세대는 어떤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가? 또는 離村하여 非農家를 형성하는가? 본절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여 상속을 통해 농촌내부에서 小農이 끊임없이 재창출된다는 「F - 싸이클假說」이 현실에서 작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가. 相續類型別 分析

① I型(獨子の 一子相續) : 31戶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세대간의 승계과정에서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農家戶數도 불변이고 非農家화된 아들도 없다.⁵⁾ 이 형의 농가수는 父代 130戶중 31戶로 23.8%를 차지한다. I型의 規模階層은 <表 3 - 6>과 같이 1.0 ha미만이 80.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평균면적도 1,975坪에 불과해 매우 작다.⁶⁾ 그러나 이 경우에도 1.0 ~ 1.5 ha층이 3戶, 2.0 ha 이상인 大農層도 2戶 있어 I型의 상속으로 출발한 농가는 상당한 규모인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II型(多子중 一子相續) : 42戶

II型 42戶의 총 아들수는 127명으로 호당 3.02명이다. 이중 한 아들씩만 상속을 받아 상속받은 아들중 40명은 농가를 이루어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2명은 곧 땅을 팔고 離村하였다. 상속받지 못한 85명중 14명은 農地를 소유하지 못한채로 농촌에 남아 농가를 이루었고 66명은 離村하여 非農業에 종사하였다. 그 결과 농가수는 제 1세대의 42호에서 54호로 28.6% 증가하였으며 68호의 非農家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상속의 결과 父代와 子代의 農地所有規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5) 물론 제 1세대에서 일자상속받은 아들이 이촌하여 비농가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조사연구는 현재 조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와 선대와의 사이에서 상속과정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누락되었다.

6) I型의 상속면적이 작은 것은 전통사회(현 세대의 父代)에서 농가자녀의 상당수가 분가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조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축적농지가 적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열악한 경제력하에서 가족수가 적게 유지될 수 밖에 없었던 조건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表 3 - 6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I型)

TA87-5-6

단위 : 戶 (%)

區 分	父代 (상속면적)	子代 (영농출발시)
0.5 ha 미만	15 (48.4)	15 (48.4)
0.5 ~ 1.0	10 (32.3)	10 (32.3)
1.0 ~ 1.5	3 (9.7)	3 (9.7)
1.5 ~ 2.0	1 (3.2)	1 (3.2)
2.0 ha 이상	2 (6.5)	2 (6.5)
計	31 (100.0)	31 (100.0)
坪均所有面積 (坪)	1,975	1,975

表 3 - 7 子代의 職業選擇(II型)

TA87-5-7

단위 : 명 (%)

父代의 農家數	總子數	상속받은子		상속받지 못한子		
		農家 ¹⁾	非農家 ¹⁾	農家	非農家	不明 ²⁾
42	127	40	2	14	66	5
	(100.0)	(31.5)	(1.6)	(11.0)	(52.0)	(3.9)
父代 1 戶當	3.02	0.95	0.05	0.33	1.57	0.12

1) 상속후 3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상속인의 나이가 적어 학생이거나 아직 분가하지 않은 경우임.

먼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자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父世代의 농지가 분할되지 않고 子代에 그대로 승계됨으로써 所有規模의 축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지 못한 14명의 아들이 농촌에 잔류함으로써 출발조건이 열악한 無土地農家が 다수 창출되고 있다. 그 결과 父代의 평균 소유면적은 1,660 坪이었으나 子代의 출발점에서는 1,228 坪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상속받은 2명의 자녀가 非農家化함으로써 3,400 坪 (II 型의 총 상속면적 69,720 坪의 4.9 %)의 농지가 일단 비농민의 소유로 바뀌었다. 이들은 각각 2,000 평과 1,400 평을 상속받아 都市에서의 생활기반마련을 위해 판매하였기 때문에 不在地主化하지는 않았다.

表 3 - 8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Ⅱ型)

TA87-5-8

단위: 戶(%)

區 分	父 代 (상속면적)	子 代 (상 속 시)		
		農 家	非 農 家	
			상 속 받 음	무 상 속
無 耕 地	0 (-)	14 (25.9)		66
0.5 ha미만	23 (54.8)	22 (40.7)	1 (50.0)	
0.5 ~ 1.0	16 (38.1)	15 (27.8)	1 (50.0)	
1.0 ~ 1.5	2 (4.8)	2 (3.7)		
1.5 ~ 2.9	0 (-)	0 (-)		
2.0 ha이상	1 (2.4)	1 (1.9)		
計	42(100.0)	54(100.0)	2 (100.0)	66
平均所有面積(坪)	1,660	1,228	1,700	-

[3] Ⅲ型(一子承繼後 分割): 10戶

Ⅲ型 10戶의 총 아들수는 31명으로 호당 3.1명이다. 이 경우에는 父의 사망(또는 은퇴)후 한 아들⁷⁾이 일괄 승계받아 다른 형제들이 분가해 나감에 따라 분할하였다. 일괄 승계받은 아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였고 나중에 분할받은 14명중 7명은 農家化 7명은 非農家化 하였으며, 상속을 받지 못한 7명은 비농가화하였다. 이 결과 農家數는 父代의 10戶에서 17戶로 증가하였으며 14戶의 非農家가 창출되었다.

一子が 일괄승계하여 후에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해 주는 이 경우에도 2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즉 父로부터 승계받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분할한 경우도 있고, 本人이 어느정도 소유지를 확장시킨 후에 분할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 조사농가중 전자는 6건, 후자는 4건이었다. 후자의 경우 일괄승계후 분할이 완료

7) 10戶중 8戶는 장남이 승계하여 나중에 분할함. 나머지 2戶는 차남이 승계하였는데 그중 1戶는 장남이 외지로 분가하여 농업에 종사한 경우이고 1戶는 장남이 비농가화한 경우임.

表 3 - 9 子代의 職業選擇 (Ⅲ型)

TA87-5-9

단위 : 명 (%)

父代의 農家數	總子數	일괄 승계 받은 자 (農家)	나중상속받은자		상속받지 못한 자		
			農家	非農家	農家	非農家	不明
10	31 (100.0)	10 (32.3)	7 (22.6)	7 (22.6)	0 (-)	7 (22.6)	0 (-)
父代 1 戶當	3.10	1.00	0.70	0.70	0.00	0.70	0.00

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년, 그동안 확장된 면적은 평균 2,747 坪이었다.⁸⁾

이러한 상속 (또는 증여)의 결과 父代와 子代의 農地所有規模의 變化는 <表 3-10>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子代 출발점의 소유규모가 父代의 상속규모에 비해 현저히 영세화되었다는 점이다. 父代에는 1.0 ha 이상층이 60.0 %를 차지하고 평균소유면적이 2,620 坪이었으나, 子代에는 58.8 %가 0.5 ha 미만의 규모로 출발하고 있고 어느정도 축적이 일어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유면적은 1,682 평에 불과하였다.

8) 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A (평야마을 3번) : 장남이 29 세때 父사망, 상속농지는 3,000 평이었음.

차남과 삼남은 분가전 같이 농사에 참여하였으며 분가시 각각 1,000 평 씩의 농지를 구입하여 마을내로 살림을 내줌. 4 남은 서울로 이촌하여 비농가화.

사례 B (평야마을 34 번) : 장남이 19 세때 父사망. 장남 차남이 모두 외지에 나가 비농업에 종사하고 모친이 영농. 장남은 비농업소득으로 농지 2,000 평을 구입하였으며 34 세 (1980 년) 때 귀향하여 영농. 차남은 1985 년에 이웃마을로 분가하였으며 이때 소유지 800 평을 증여하고 1,200 평을 구입해줌.

사례 C (중간마을 1 번) : 장남이 19 세때 경영권 승계. 이때 승계면적 3,600 평. 당대에 4,090 평을 확장시켜 차남, 삼남에게 각각 1,000 평, 2,200 평을 분할상속해 주었으며 둘은 이촌하여 비농가화 하였음.

사례 D (중간마을 29 번) : 장남이 16 세때 父사망. 상속면적 3,600 평.

당대에 1,700 평을 구입하여 차남에게 1,700 평, 삼남에게 800 평을 증여하였음.

차남, 삼남은 이촌하여 비농가화 하였음.

表 3 - 10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Ⅲ型)

TA87-5-10

단위 : 戶(%)

區 分	父 代 (상속면적)	子 代 (상 속 시)		
		農 家 ¹⁾	非 農 家	
			상 속 받 음	무 상 속
無 耕 地	0 (-)	0 (-)	0 (-)	7
0.5 ha 미만	2 (20.0)	110 (58.8)	5 (71.4)	
0.5 ~ 1.0	2 (20.0)	4 (23.5)	2 (28.6)	
1.0 ~ 1.5	6 (60.0)	3 (17.6)	0 (-)	
1.5 ~ 2.0	0 (-)	0 (-)	0 (-)	
2.0 ha 이상	0 (-)	0 (-)	0 (-)	
計	10(100.0)	17(100.0)	7(100.0)	7
平 均 所 有 面 積(坪)	2,620	1,682 ²⁾	1,330	-

1) 형제들에 대한 분할이 끝난 시점에서의 규모별 분포임.

2) 이중 646평 (총 10,990 평)은 장남이 일괄승계후 동생들에 대한 분할이 끝날때까지 축적한 면적임.

한편, 父代에서 물려받은 농지 26,200 평중 9,308 평 (35.5 %)이 非農民子女에 승계됨으로써 不在地主化되었으며, 이는 바로 農家資産의 非農業部門으로의 유출원인으로 작용하였다.

④ Ⅳ型(多子分割相續) : 25戶

Ⅳ型 25 戶의 총 아들수는 79 명으로 호당 3.16 명이다. 父에게서 농지를 상속받은 아들은 68 명 (86.1 %)으로 이중 44 명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나머지 34 명과 농지를 상속받지 못한 아들 10 명은 非農家화하였다. 그 결과 농가수는 제 1 세대의 25 戶에서 44 戶로 76.0 % 증가하였으며 비농가도 34 戶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상속의 결과 父代와 子代의 농지소유규모의 변화는 < 表 3 - 12 > 와 같다.

Ⅳ型의 상속형태에서는 평균 상속인수가 2.72 명이며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농지

表 3-11 子代의 職業選擇 (Ⅳ型)

TA87-5-11

단위 : 명 (%)

父代의 農家數	總子數	상속 받은 자		상속 받지 못한 자		
		農家	非農家	農家	非農家	不明
25	79 (100.0)	44 (55.7)	24 (30.4)	0 (-)	10 (12.7)	1 (1.3)
父代 1戶當	3.16	1.76	0.96	0.00	0.40	0.04

의 細分化 현상도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⁹⁾ 父代의 상속면적은 평균 4,458 평이며 72.0%가 1.0 ha 이상의 中大農層이던 것이 分割상속의 결과 평균 소유면적은 1,814 평으로 父代에 비해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장 많은 상속을 받은 경우가 3,800 평, 36 戶 (81.8%)가 1.0 ha 미만으로 零細化의 진행이 뚜렷하다.¹⁰⁾

- 9) 상속인이 가장 많은 경우는 5명으로 근교마을의 27 번가구와 산간마을의 37 번가구이다. 전자는 상속면적이 3,000 평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아들이 각각 1,300, 300, 300, 500, 600 평씩 분할상속받아 모두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후자는 상속면적이 9,140 평의 대농으로 5명의 아들이 각각 2,500, 1,900, 1,100, 3,640, 1,100, 400 평씩 상속받아 5남을 제외한 4 아들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 10) 분할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세분화가 어느정도 일어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集中度를 사용할 수 있다. 집중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_i = \sum_j \left(\frac{A_{ij}}{\sum_j A_{ij}} \right)^2$$

단 C_i : i 사례의 집중도 A_{ij} : i 사례 j 번째 아들의 상속면적

이렇게 계산된 집중도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그 크기가 작을수록 세분화의 경향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자녀에 분할되면 그 값은 0.5 이상, 3명이면 0.33 이상, 4명이면 0.25 이상이 된다. 그리고 상속인의 수가 같더라도 그중 1인에게 대부분의 농지를 상속시키면 집중도는 높아진다.

분할상속이 일어난 Ⅲ, Ⅳ型 35 호에 대해 集中度를 계산한 결과는 <表 1>과 같다. Ⅲ型의 평균 집중도는 0.483 인데 비해 Ⅳ型은 0.446 으로 Ⅳ型에서 농지의 세분화 현상이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父代의 상속면적이 클수록 집중도가 낮아 大農層의 세분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2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Ⅳ型)

TA87-5-12

단위: 戶(%)

區 分	父 代 (상속면적)	子 代 (상 속 시)		
		農 家	非 農 家	
			상 속 받 음	무 상 속
無 耕 地	0(-)	0(-)	0(-)	10
0.5 ha미만	3(12.0)	19(43.2)	19(79.2)	
0.5 ~ 1.0	4(16.0)	17(38.6)	5(20.8)	
1.0 ~ 1.5	7(28.0)	8(18.2)	0(-)	
1.5 ~ 2.0	5(20.0)	0(-)	0(-)	
2.0 ha이상	6(24.0)	0(-)	0(-)	
計	25(100.0)	44(100.0)	24(100.0)	10
平均所有面積(坪)	4,458	1,814	954	-

表 1 Ⅲ,Ⅳ 型의 集中度 分布

단위: 件

區 分	0.65 ~0.60	0.60 ~0.55	0.55 ~0.50	0.50 ~0.45	0.45 ~0.40	0.40 ~0.35	0.35 ~0.30	0.30 ~0.25	平 均 集中度
Ⅲ 型		1	5		3		1		0.483
Ⅳ 型	1	5	7			4	5	3	0.446
計	1	6	12	0	3	4	6	3	0.457

表 2 父代의 相續規模別 集中度 分布¹⁾

단위: 件

區 分	0.65 ~0.60	0.60 ~0.55	0.55 ~0.50	0.50 ~0.45	0.45 ~0.40	0.40 ~0.35	0.35 ~0.30	0.30 ~0.25	平 均 集中度
0.5ha미만		1	2			1	1		0.464 ²⁾
0.5~1.0	1	1	4						0.551
1.0~1.5		1	4			1	2	1	0.440
1.5~2.0		2	2		2		1		0.432
2.0ha이상		1			1	2	2	2	0.378

1) 父代의 상속규모 분류는 분석의 목적상 상속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음. 즉 Ⅲ型에서 일괄승계후 형제들에 대한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확장시킨 면적은 이에 포함시켰음.

2) 추세와는 달리 0.5ha 미만의 집중도는 낮은 편이다. 이는 본장 32P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두 근교마을의 경우로 상속농지가 아들들간에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表 3-13 子代の 職業選擇(V型)

TA87-5-13

단위 : 명 (%)

父代農家數	總子數	農家	非農家	兄에게서 피증(농가)	不明
22	56 (100.0)	34 (60.7)	18 (32.1)	3 (5.4)	1 (1.8)
父代 1 戶當	2.55	1.55	0.82	0.14	0.05

한편, 24 명의 非農民子女가 농지를 상속하여 不在地主化되었는데 이들이 상속받은 면적은 總 상속면적 111,435 평의 20.6 %에 달하는 22,900 평이다.

[5] V型(無相續) : 22戶

子代에 농지상속을 전혀 해 주지 못한 22 戶의 총자녀 56 명 (戶當 2.55 명) 중 34 명은 無土地在村家口 (農業勞動者, 小作農) 로 출발하였으며, 18 명은 離村하여 비농가화하였다. 한편, 父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는 없지만 兄이 당대에 농지를 구입하여 동생을 분가시킬 때 배분한 경우가 있다.¹¹⁾ 결국 V型에서는 子代에 37 戶의 농가가 창출되었으며, 이중 3 戶를 제외한 대부분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 相續을 통한 小農의 創出(綜合)

앞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있어서 상속과정을 통하여 농가수는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農地의 細分化현상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앞의 분석을 종합하여 상속을 통한 小農의 再創出과정을 규명해 본다.

父代 130 戶의 총 아들수는 324 명으로 이중 아직 분가하지 않은 7 명을 제외하고 317 명이 새로운 가구를 창출하였다. 이중 183 명이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농가수는

11) 이러한 사례는 두가구에서 발견되었다. 한가구(평야마을 24번)는 18세에 영농을 시작하여 2,200평까지 농지를 확장시켰다가 동생이 마을내에 분가할때 600평을 증여하였다. 또 다른 가구(산간마을 32번)는 28세에 영농을 시작하여 4,420평까지 소유지를 확장시켰으며 두 동생이 분가할때 각각 970평, 1,200평을 증여하였다.

表 3-14 子代의 職業選擇 (綜合)

TA87-5-14

단위 : 명 (%)

父代의 總農家數	總子數	상속받은子		兄에게서 증여 받음(農家)	상속받지 못한子		
		農家	非農家		農家	非農家	不明
130	324 (100.0)	132 (40.7)	33 (10.2)	3 (0.9)	48 (14.8)	101 (31.2)	7 (2.2)
父代 1 戶 當	2.49	1.02	0.25	0.02	0.37	0.78	0.05

*마을별로는 <附表 9> ~ <附表 13> 참조.

父代에 비해 53 戶 (40.8%) 증가하였으며 ¹²⁾ 非農家도 134 戶 창출되었다.

농가호수의 증가와 함께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가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소유농지의 細分化和 규모축소를 불러일으킨다. 상속시 父代의 평균 소유면적이 2,066평이던 것이 子代 농가의 평균 상속면적은 1,304 평 (父代의 63.1%)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父代에 1.0 ha 이상층이 33 호 (24.4%)이던 것이 분할상속으로 인하여 20 호 (10.9%)로 감소하였다. 결국 상속과정에서 창출된 제 2세대 농가의 농지소유면적은 대부분 (89.1%)이 1.0 ha 미만의 영세소농에서 출발됨으로써 소농이 농촌 내부에서 재창출되는 메카니즘을 이루고 있으며 先代에서 축적된 농가자산이 대를 이어 확대과정을 밟지 못하고 승계과정에서 분할됨으로써 農民層分化的 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非農民子女가 농지를 상속받음으로써 農地의 非農民所有 즉 不在地主化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조사대상가구에 있어서는 총 33 호의 비농가가 35,608 평의 농지를 상속받음으로써 父代에서 상속된 총 농지 268,580 평중 13.3%가 비농민 소유지화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농가자녀들의 離村率이 더욱 높아지고 개인적 권리의식이 강하여짐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자격에 농민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 물론 이 숫자가 바로 농가수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본 분석은 현재 사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화과정에서 全家口가 離村하였거나 또는 子女들이 모두 非農家化하여 승계가 단절된 경우와 같은 農家戶數減少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表 3 - 15 世代間的 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綜合)

TA87-5-15

단위 : 戶(%)

區 分 農 地 所有規模	父 代 (상속면적)	子 代 (상 속 시)		
		農 家	非 農 家	
			상 속 받 음	무 상 속
無 農 地	22(16.9)	48(26.2)		101
0.5 ha미만	43(33.1)	69(37.7)	25(75.8)	
0.5 ~ 1.0	32(24.6)	46(25.1)	8(24.2)	
1.0 ~ 1.5	18(13.8)	16(8.7)		
1.5 ~ 2.0	6(4.6)	1(0.5)		
2.0 ha 이상	9(6.9)	3(1.6)		
計	130(100.0)	183(100.0)	33(100.0)	101
平均所有面積(坪)	2,066	1,304	1,079	-

補 論 父代の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

第 3 章에서는 상속유형별로 子代の 職業選擇과 子代農家の 출발시 農地所有面積을 분석하여 상속에 따른 농지의 細分化현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父代の 농지 상속면적규모에 따라 子代에 농가 또는 비농가가 얼마씩 창출되었으며 또 子代農家の 출발시 소유면적규모는 어느정도인가를 본다.

〈表 3 -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규모가 클수록 子代農家の 규모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자대의 농가호수에 관해 보면 상속규모가 클수록 父代 1 戶當 창출되는 子代農家戶數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상속규모 0.5 ha 미만층에서는 父代 1 戶當 1.21 戶의 농가가 창출되고 있는데 비하여, 2.0 ha 이상층에서는 1.89 戶씩의 농가가 창출되고 있다. 단 父代에 無耕地인 경우에는 子代農家數가 평균 1.68 戶로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는 父代の 경제력이 너무 열악하여 子女들이 離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마저도 갖기가 어려웠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한편, 父代 1 戶當 非農家戶數는 父代의 상속규모에 큰 關係없이 평균 0.72~1.33 戶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表 3 - 16 父代의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

TA87-5-16

단위 : 戶 (%)

父 代 相續規模			無 耕 地	0.5ha미만	0.5 ~ 1.0	1.0 ~ 1.5	1.5 ~ 2.0	2.0ha 이상
區 分								
父 代 戶 數 (A)			22	43	32	18	6	9
子 代 家 口 數	農 家	無 耕 地	34(91.9)	8(15.4)	6(15.4)			
		0.5ha미만	3(8.1)	44(84.6)	8(20.5)	13(44.8)		1(5.9)
		0.5 ~ 1.0			25(64.1)	8(27.6)	5(55.6)	8(47.1)
		1.0 ~ 1.5				8(27.6)	3(33.3)	5(29.4)
		1.5 ~ 2.0					1(11.1)	
		2.0ha이상						3(17.6)
	小 計 (B)		37(100.0)	52(100.0)	39(100.0)	29(100.0)	9(100.0)	17(100.0)
非 農 家 (C)		17	44	42	13	5	12	
B / A			1.68	1.21	1.22	1.61	1.50	1.89
C / A			0.77	1.02	1.31	0.72	0.83	1.33

* 마을별로는 < 附表 18 > ~ < 附表 21 > 참조

第 4 章

世代内に 있어서 農家の 動態的 變化

第 3 章에서는 세대간의 승계과정에서 농가의 자산(농지)이 어떻게 상속되며 그로 인해 새로 출발하는 농가의 농지소유규모는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小農의 再生産過程을 규명하였다. 본장에서는 이와같이 하여 출발된 농가의 당대에 있어서 농지소유변화를 분석하였다.¹⁾

第 2 章에서는 제시된 가설에 의하면 당대에 있어서 농지소유의 변화는 經營主의 生涯週期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이는 6 단계로 나누어지지만 크게 擴張期와 收縮期の 2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擴張期는 形成期, 擴張期, 完全擴張期를 포함하며, 收縮期는 그 이후의 3단계를 포함한다.

1. 擴張期の 農地所有變化

가. 分析對象

各 조사대상 197 戶중 과거에 영농사실이 없거나 family profile의 추적이 어려운 가구를 제외한 농가는 181 戶이다.

1) 물론 타직업에서 전업한 농가 등 상속과정에 의하지 않고 형성된 농가가 존재한다. 농가출발형태의 다양함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本章 말미의 [補論 1]에서 설명하였다.

表 4 - 1 擴張期 農地所有變化 分析對象

TA87-5-17

區 分		近 郊	平 野	中 間	山 間	計
總 農 家 數		51	49	33	48	181
제외가구	40세 이후에 영농 참여	4	5		1	10
	10년이상 외지생활(단절)		1	1	3	5
	여자 경영주 가구 *	1				1
	농가 출발후 10년 미만	4	6	8	9	27
分 析 對 象 農 家 數		42	37	24	35	138

* F-씨익클 초기(경영주 27세)에 경영주가 사망하여 부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임.

이중에서도 43戶는 經營主의 生涯週期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에 부적절한 조건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결과 총분석대상농가는 138戶가 되었다. 마을별로 분석에서 제외된 가구의 내용과 대상호수는 <表 4 - 1>과 같다.²⁾

나. 變化類型의 區分

F-씨익클상의 확장기라 하여도 모든 농가에서 농지소유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소유규모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가족경제의 노동력, 소비 등의 구조이며, 이것이 경영주의 연령이라는 F-씨익클상의 위치로 나타내어지기는 하지만 개별농가에 있어서 특수한 여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소유규모의 변화를 類型化하여 구분하고 과연 현실이 F-씨익클가설을 뒷받침하는가, 가설과 다른 변화규형을 보이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농지소유규모의 변화는 <圖 4 - 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확장기의 마지막(경영주 55세)³⁾⁴⁾과 농가 출발시의 소유면적⁵⁾을 비교하여 그것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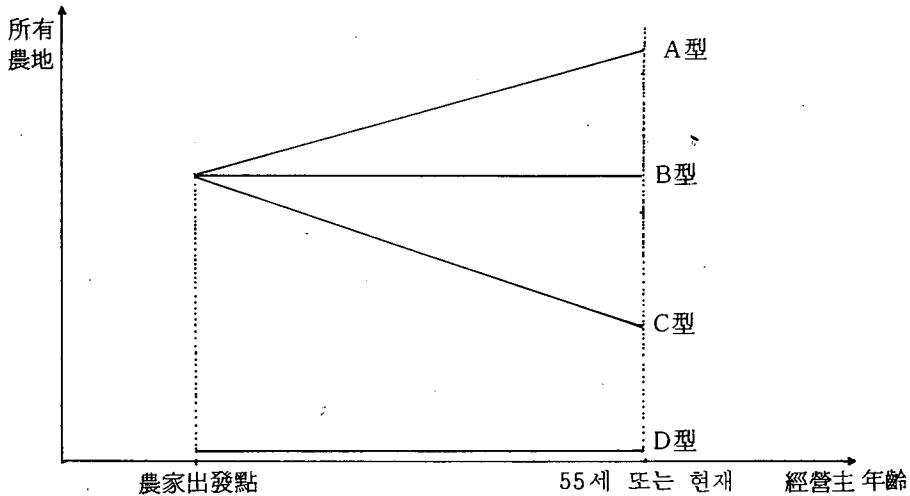
2) 제외시킨 43戶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석은 제외시켰지만 그 개략적인 내용은 本章 말미의 [補論 2]에서 설명하였다.

3) 이는 조사대상농가에서의 가족주기를 분석한 결과는 아니다. 가족주기는 혼인연령, 자녀수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별, 개별 가족별로 그 편차가 있으리란 점은 당연하며, 그 분석은 시기별 횡단분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姜熙經外(1982)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였다.

4) 사례농가중에서는 경영주의 현재 연령이 55세미만인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5) 출발시점은 경영권의 승계시(父사망시가 아님), 분가시, 타직업에서의 전업자는 전업시기로 하였다. 이 중 경영권의 승계시점은 현재 경영주에 대한 면접에 의해 조사되었다.

圖 4 - 1 擴張期の 農地所有面積 變化類型



하였는가 또는 유지, 감소되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여기에서 D型은 B型의 특수한 형태로 농가출발시부터 55세까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구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농가를 이와같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量的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증감 기준을 300평으로 잡아 300평 이상 증가한 농가를 A型, 300평 이상 감소한 농가를 C型, 300평 미만의 증감농가는 B型으로 구분하였다.

다. 分析結果

① 類型別 農家 戶數

앞의 기준에 따른 구분 결과는 <表 4 - 2>와 같다. 총 분석대상 138戶중 70호

表 4 - 2 擴張期 變化類型別 農家戶數

TA87-5-18

단위; 戶(%)

區 分	近 郊	平 野	中 間	山 間	計
A 型	18 (42.9)	19 (51.4)	10 (41.7)	23 (65.7)	70 (50.7)
B 型	12 (28.6)	2 (5.4)	6 (25.0)	8 (22.9)	28 (20.3)
C 型	3 (7.1)	10 (27.0)	6 (25.0)	3 (8.6)	22 (15.9)
D 型	9 (21.4)	6 (16.2)	2 (8.3)	1 (2.9)	18 (13.0)
計	42(100.0)	37 (100.0)	24(100.0)	35(100.0)	138(100.0)

(50.7 %)가 확장기에 농지소유규모를 확대시켰으며, 46 호 (33.3 %)는 유지, 22 호 (15.9 %)에서는 오히려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즉 현실자료가 부분적으로는 「 F-사이클 가설 」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나 가설과는 다른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産業化의 진행과 함께 F-사이클에 작용하는 제요인에 변화를 가져와 다양한 형태를 노정시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第2章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教育年數의 증가와 도시에로의 이농으로 자녀의 영농참여가 감소하여 노동력부족을 야기시키고, 교육비 부담, 자녀의 都市定着 지원을 위한 資産의 流出 등이 擴張制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B, C, D型的의 농가를 분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증적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을별로는 비교적 地價가 싼 山間마을에서 A型的의 비율이 가장 높아 확장이 순조롭게 일어났다고 보아진다. 이 마을은 지가 요인 이외에도 農家戶數의 감소가 격심하여 호당 면적의 확대기회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近郊마을과 中間마을에 있어서는 A型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② 出發時의 所有面積과 變化類型

擴張期の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농가출발시의 조건을 드는 시각이 있다. 즉 농가출발시의 소유면적이 클수록 그 경제적 여건이 낮기 때문에 농지확대의 여력이 더욱 크며, 출발시 면적이 영세할 수록 오히려 그 소유면적은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農業經營體의 양극화현상을 상징한 것으로 農民層分解論의 시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사례농가의 현실적 분석결과와는 이 견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表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出發時點의 소유규모가 영세할수록 오히려 增加類型(A型)의 비율이 높으며, 출발시점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A型도 있지만 B, C型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 3장에서 분석한 결과인 상속과정을 통한 中大農의 해체와 소농의 재창출이란 현상 이외에도, 확장기에서의 농지소유 변화현상은 농민층 양극분해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고 보아진다.

③ A型的의 變化

擴張期에 있어 그 소유면적이 증가한 A型농가라 하여도 그 변화양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증가면적의 규모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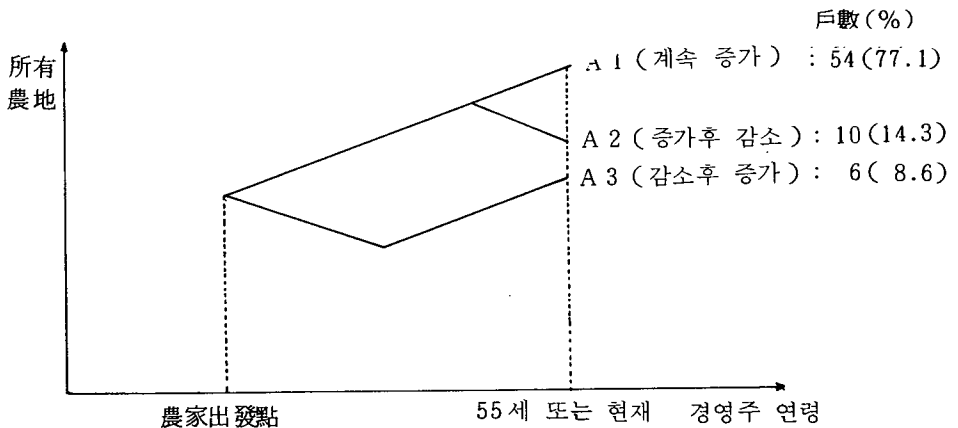
表 4 - 3 農家出發時 所有規模別 變化類型

TA87-5-19

단위 : 戶 (%)

出發時 所有規模	A 型	B 型	C 型	計
0.5 ha미만	49 (69.0)	15 (21.1)	7 (9.9)	71 (100.0)
0.5 ~ 1.0	14 (45.2)	9 (29.0)	8 (25.8)	31 (100.0)
1.0 ~ 1.5	5 (38.5)	4 (30.8)	4 (30.8)	13 (100.0)
1.5 ~ 2.0	1 (100.0)	0 (-)	0 (-)	1 (100.0)
2.0 ha이상	1 (25.0)	0 (-)	3 (75.0)	4 (100.0)

圖 4 - 2 A型의 分類



먼저 그 형태에 대해서는 減少局面을 가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圖 4 - 2>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감소국면이 없는 A 1형은 54호 (77.1%)이며 감소국면이 있는 A 2, A 3형은 각각 10호 (14.3%), 6호 (8.6%)로 나타나 확장기 전체를 통해서는 소유면적이 증가한 A형이라 하여도 부분적으로는 감소현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增加面積의 크기를 보면 <表 4 - 4>와 같다. 호당 총 증가면적이 2,153평, 감소면적이 374평으로 純增加는 평균 1,779평이다. 이중 31호 (44.3%)는 1,500평미만의 소폭증가에 그쳤지만, 3,000평 이상을 확대시킨 농가도 10호 (14.3%)가 된

表 4 - 4 A型的 所有農地 増加

단위 : 戶 (%)

TA87-5-20

增 加 面 積 (坪)		A 1	A 2	A 3	A型 전체
300 ~ 1,000		16	2	2	20 (28.6)
1,000 ~ 1,500		10		1	11 (15.7)
1,500 ~ 2,000		11	3	1	15 (21.4)
2,000 ~ 2,500		6	2	1	9 (12.9)
2,500 ~ 3,000		3	1	1	5 (7.1)
3,000 ~ 4,500		5	2		7 (10.0)
4,500 ~ 6,000		1			1 (1.4)
6,000 坪 이상		2			2 (2.9)
計		54	10	6	70 (100.0)
平均 增加 面積 (坪)	總 增 加	1,848	3,637	2,906	2,153
	減 少	53	1,727	1,483	374
	純 增 加	1,795	1,910	1,423	1,779

다. 유형별로는 A 3 型的 증가면적이 작은 편이고 A 1, A 2 型은 비슷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의 하나는 A 2, A 3 型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농가 출발 시보다 소유면적이 증가하였지만 상당한 면적의 감소가 동시에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A 2, A 3 型에 있어서 감소의 原因과 면적은 <表 4 - 5>와 같다. 가장 큰 감소원인은 子女 및 兄弟의 分家時의 農地贈與로 14 건에 19,470 坪 (74.4 %)이고 다음이 教育費負擔, 疾病의 순이다. 여기에서 형제의 분가로 인한 감소는 經營主가 父代에서 농지를 일괄 승계받은 경우이며, 子女分家は 해당 농가에서의 收縮期가 일찍 시작된 경우로 경제적 요인보다는 人口・家族的 特性이 중요한 감소원인임을 알 수 있다.⁶⁾

6) 자녀들의 분가시점은 경영주가 각각 43, 46, 49세일 때다 이 농가들에 있어서는 F - 싸이클이 비교적 빠른 연령대에서 시작된 때문이며 결국 자녀, 형제의 분가로 인한 농지면적의 감소는 확장기에서 농지소유면적이 증가한다는 「F - 싸이클 가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表 4 - 5 A型의 農地減少原因

단위 : 件, 坪 (%)

TA87-5-21

區 分	A 2		A 3		計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¹⁾	面 積
子 女 分 家	3	6,300			3	6,300 (24.1)
兄 弟 分 家	6	6,770	5	6,400	11	13,170 (50.3)
教 育 費	2	1,400	1	800	3	2,200 (8.4)
疾 病	2	1,800			2	1,800 (6.9)
營 農 失 敗	1 ²⁾	1,000			1	1,000 (3.8)
移 住			1 ³⁾	600	1	600 (2.3)
其 他			1	1,100	1	1,100 (4.2)
計	14	17,270	8	8,900	22	26,170 (100.0)

- 1) 한 농가에도 감소원인이 2가지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 件數는 戶數와 동일하지 않음.
- 2) 축산(젖소)실패로 6,490 평중 1,000 평 판매(中間마을, 1번 농가).
- 3) 외지에서 전입해 들어오면서 농지 모두 판매(山間마을, 15번 농가, 경영주 14세때 임).

A型에 있어서 각 연령대별(3세 단위 구분) 평균 증감면적을 보면 <表 4 - 6>과 같다. 계산방식 I은 실제의 증감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방식II는 子女, 兄弟의 分家로 인한 減少部分은 제외시킨 것이다. 즉 개별가구에 있어 「F-싸이클 週期」를 조정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25세까지는 증가속도가 낮고 26세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져 29~37세때 정점을 이루며 그 이후의 연령이 되면 증가면적이 작아진다.

A型 농가 70戶의 農家出發時點의 평균 연령은 25.4세이고 소유면적은 1,136평이다. 따라서 <表 4 - 6>의 계산결과를 원용하여 A型의 평균적 농지 소유면적변화를 나타내면 <圖 4 - 3>과 같다. 여기에서 추세 I은 실제면적변화의 추세치이고 추세 II는 분가형제에 대한 증여면적은 출발점의 면적에서 減하고 분가자녀에 대한 증여분은 고려하지 않은 假想趨勢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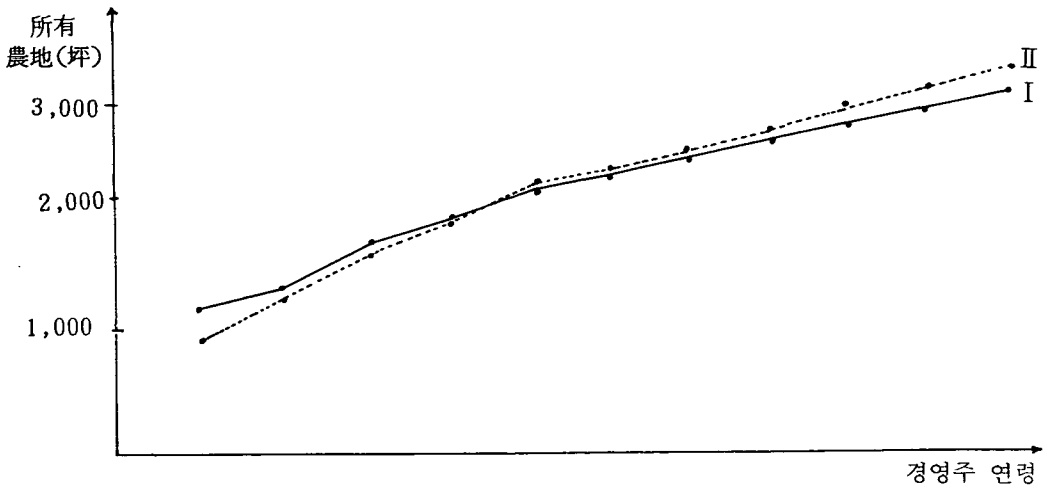
表 4 - 6 A型의 年平均 農地增減面積

TA87-5-22

단위 : 坪

經 營 主 年 齡	年 平 均 增 減 面 積	
	방 식 I	방 식 II
~ 19	- 9	- 9
20 ~ 22	49	72
23 ~ 25	41	41
26 ~ 28	68	102
29 ~ 31	125	130
32 ~ 34	56	67
35 ~ 37	104	121
38 ~ 40	56	62
41 ~ 43	71	82
44 ~ 46	49	63
47 ~ 49	62	73
50 ~ 52	67	67
53 ~ 55	39	39

圖 4 - 3 A型의 農地所有面積 變化趨勢



所有面積 (坪)	I	1,136	1,313	1,688	1,856	2,168	2,336	2,549	2,696	2,882	3,077	3,204
	II	968	1,233	1,623	1,824	2,187	2,373	2,619	2,808	3,024	3,225	3,342

4 B, C, D型의 變化

擴張期에 농지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한 B, C, D型에서는 무엇때문에 농지축적이 제약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농가들을 구체적 형태에 의해 좀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각 유형에서 감소 또는 증가국면을 갖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圖 4 - 4>와 같다. 총 68호중 전혀 증감이 없는 농가(B 2, D 2)가 37호이며, 감소만 있는 농가(C 2)가 15호인 반면 증가와 감소가 같이 있는 농가(B 1, B 3, C 1, C 3, D 1)도 16호가 있다. 즉 확장기 전체로 보아서는 농지소유면적이 증가하지 않은 유형에서도 상당수(23.5%)는 부분적으로 증가국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圖 4 - 4 B, C, D型의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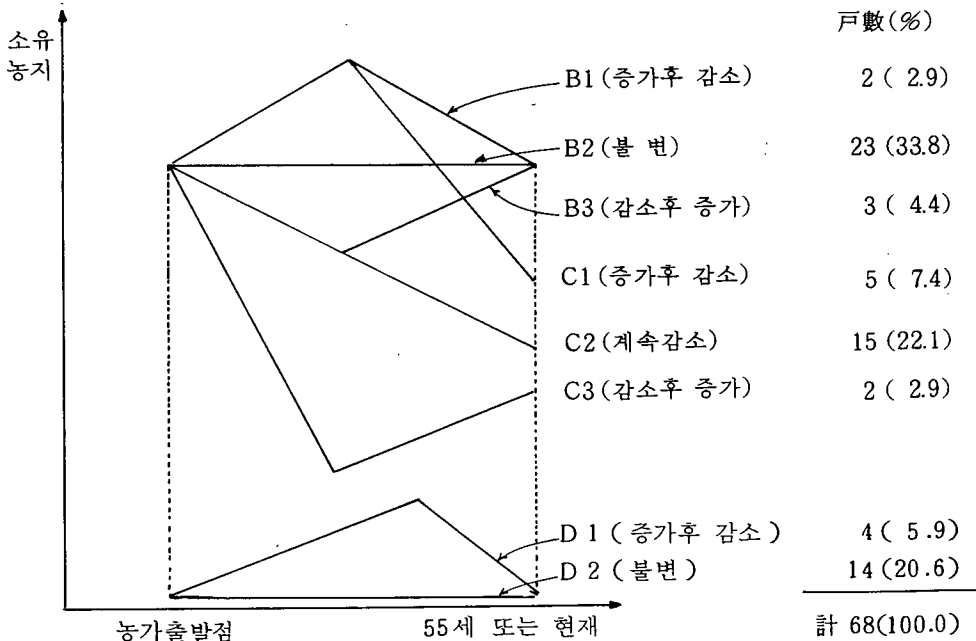


表 4 - 7 B, C, D型的 農地減少原因

TA87-5-23

단위 : 件, 坪(%)

區 分	B 1, B 3		C 1, C 2, C 3		D 1		計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子女分家			4	4,873			4	4,873(7.5)
兄弟分家	1	600	8	7,280			9	7,880(12.1)
教 育 費	2	700	9	11,300	1	600	12	12,600(19.3)
疾 病			5	9,300	1	400	6	9,700(14.9)
營農失敗	1	600	4	4,200			5	4,800(7.4)
農外事業 (移住費用)	1	600	6	17,300	1	2,000	8	19,900(30.5)
其 他*			5	3,500	1	2,000	6	5,500(8.4)
計	5	2,500	41	57,753	4	5,000	50	65,253(100.0)

* 其他는 부채상환, 생활비 충당, 뚜렷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임.

감소국면을 가진 유형에서의 농지감소원인은 <表 4 - 7>과 같다. 가장 큰 감소원인으로는 農外事業의 실패 및 이주비용⁷⁾충당이며, 다음이 子女 및 兄弟의 分家에 따른 增與, 교육비, 疾病으로 인한 치료비부담, 영농실패의 순이다. 즉, 농업경영 내부요인 보다는 창고업 등 농외사업의 실패나 都市移住의 시도로 인한 감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分家등의 家族的 要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教育費負擔이 커 산업화에 따른 F-사이클의 형태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농지증감의 변화가 없는 B2, D2형에서는 그 制約要因은 뚜렷하지 않으나 家族構造를 분석해 보면 <表 4 - 8>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⁸⁾ B2, D2型的 특징은 출발시의 소유면적이 비교적 작다는 것이다. 子女의 教育費負擔이 주원인으로 추정되

7) 이중 1호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농지감소라기보다는 地價의 차이에 따른 명목면적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 농가는 16세때 父로부터 상속받은 1,700평의 농지를 처분하고 外地(전남 보성군)로 나가 값이 싼 간척지 땅을 6,000평 구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43세때 다시 마을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보성의 소유지를 처분하고, 1,000평을 구입하였다.

8) 다른 유형과는 달리 B2, D2형에서는 농지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확대 제약요인을 찾는 방법으로 경영주에 대한 직접 질문보다는 자녀들의 교육정도, 집안에 특별한 우환이 있었는가 등에 대한 자료를 원용하였으나 <表 4 - 8>의 결과에서와 같이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表 4 - 8 B2, D2型の 農地擴大制約要因

TA87-5-24

단위: 戶

區 分	教 育 ²⁾	疾 病	子女養育 ³⁾	其 他	計
無 耕 地 ¹⁾	3			11	14
0.5 ha 미 만	1	3	1	7	12
0.5 ~ 1.0 ha	3		1	3	7
1.0 ~ 1.5 ha	3			1	4
計	10	3	2	22	37
平均所有面積(坪)	1,725	760	1,450	731	1,041

1) D2型입

2) 자녀중 대학생 1명 또는 고교생 3명이상인 경우

3) 자녀 7명이상을 키운 경우

는 가구의 출발지 면적은 비교적 큰 편이나, 특히 출발시점의 소유면적이 영세하거나 아예 무경지인 농가들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조건의 열악함 때문에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B, C, D型에 있어서 農地増減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表 4 -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호의 농가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농지증가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감소가 일어나 전체적으로는 농지확대가 제약된 것이다. 특히 C1, C3型은 증가면적이 평균 2,992 평, 감소면적이 4,269 평으로 변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한가지 관심사항은 家族週期상의 시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兄弟 및 子女의 分家시 贈與면적을 제외한다면 B, C, D型은 다른 변화형태를 띠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表 4 - 10〉은 이러한 관점에서 유형을 재분류한 것이다. B型에서 A型으로의 이동이 1호, C型에서 B型으로의 이동이 5호 등 6호 외에는 실제유형과 변화가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은 개별농가들에 있어서 분가로 인한 농지감소와 다른 감소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表 4 - 9 B, C, D型의 農地增減面積

단위 : 戶, 坪

TA87-5-25

區 分		B 型		C 型		D 型	
		B1, B2	B2	C1, C3	C2	D1	D2
戶 數		5	23	7	15	4	14
平 均	增 加	548	32	2,992	290	1,250	0
增 減	減 少	500	26	4,269	1,859	1,250	0
面 積	純增減	8	5	△ 1,277	△ 1,569	0	0

表 4 - 10 分家로 인한 減少를 고려한 變化類型

단위 : 戶 (%)

TA87-5-26

실제유형 분가요인제외 (가상)	B.	C	D	計
A	1			1 (1.5)
B	27	5		32 (47.1)
C		17		17 (25.0)
D			18	18 (26.5)
計	28	22	18	68 (100.0)

⑤ 擴張期の 動態的 變化 綜合

「F-싸이클 가설」에서는 농가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농가출발시부터 경영주가 55세 되는 때까지의 기간을 擴張期라 하여 農地(資産)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분석에 의하면 138호중 70호에서만 농지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 68호에서는 농가출발시의 면적을 維持하거나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이와같이 농지확대가 제약되고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子女 및 兄弟의 分家時 贈與에 따른 농지감소이다. 이는 본인이 父代에서 일할 승계받은 면적을 분할해 주었거나, 가족주기가 빨라 자녀가 일찍 분가한 경우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농지감소 현상은 「F-사이클 가설」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産業化에 따른 農村 家族構造의 변화이다. 「F-사이클」의 확장기에서는 성장한 자녀들이 농촌에 남아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지만,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離村脫農이 일어나며, 더우기 고등교육의 확대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농가자산 확대가 제약되고 있다.

세째, 가구원 특히 경영주의 오랜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의 저하, 치료비부담이 농지확대의 제약요인이 된 경우는 수는 많지 않지만 개별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네째, 농외사업이나 도시이주 생활의 실패로 인해 소유규모가 축소된 농가는 모두 9호이다. 특히 농외사업(창고업 등)은 농촌에서 일반화된 활동이나 過投資나 경영능력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영농실패로 인한 농지감소는 그 비중이 작다. 아직 상업화의 진전이 크지 않아 실패의 경우에도 家計 내에서 충격이 흡수되었지만 양제, 양돈, 낙농에서 실패한 경우 농지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보면 「F-사이클」에 따라 확장기에 농지를 확대시키는 경향은 있지만 産業化에 대한 대응방식과 각 농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그 구체적 변화형태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유형별로 확장기에 있어서 農地所有面積의 變化를 정리하면 <表 4 - 11>과 같다.

表 4 - 11 擴張期の 農地所有面積 變化

TA87-5-27

단위 : 坪

區 分		A 型	B 型	C 型	D 型	計
출 발 시 면 적		1,136	1,695	2,819	0	1,370
변 화	증 가	2,153	124	1,150	278	1,337
	감 소	374	111	2,626	278	667
	순 증 감	1,779	13	△ 1,476	0	670
55세(또는 현재)면적		2,915	1,708	1,343	0	2,040

2. 收縮期の農地所有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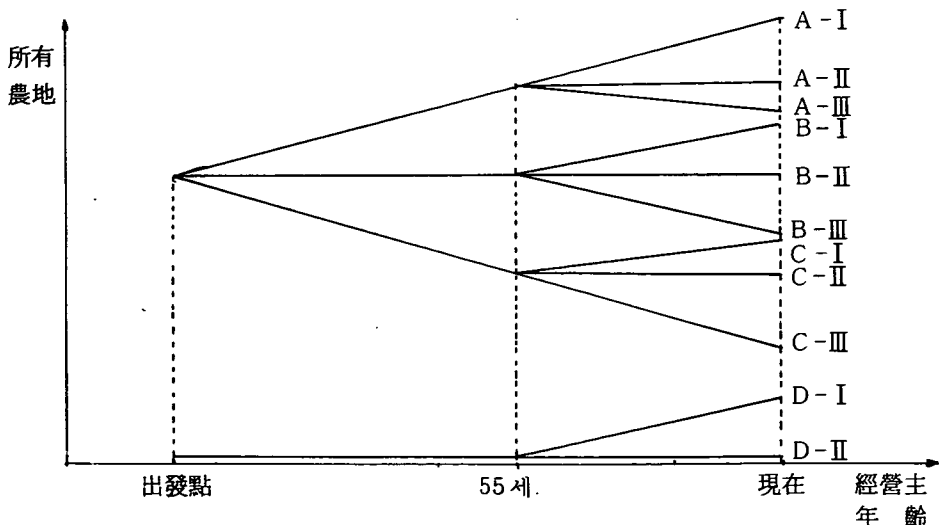
가. 分析對象

擴張期の 分析對象農家 138 호중 經營主 年齡이 56 세 이상인 69 호가 분석대상이다
마을별로는 近郊 21 호, 平野 19 호, 中間 11 호, 山間 18 호이다.

나. 變化類型的 區分

F - 싸이클상의 수축기에서 모든 농가의 농지소유면적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수축기에 작용하는 조건이 노동력의 노쇠화와 분가에 따른 증여라고 할때, 이는 개별농가에 있어 營農後繼者의 유무나 자녀들의 分家形態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축기에서도 농지는 증가하거나 아니면 不變일수도 있는 것이다. 수축기의 변화유형을 I 型(증가), II 型(유지), III 型으로 구분하고 이를 擴張期の 變化類型과 결합시키면 <圖 4 - 5> 와 같은 11 개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변화의 量的基準은 300 평으로 하여 300 평 이상 증가한 경우를 I 型, 300 평 이상 감소한 경우를 III 型으로 하였다.

圖 4 - 5 收縮期の 農地所有面積 變化類型



앞의 기준에 따른 구분결과는 <表 4 - 12>와 같다. 총 분석대상 69 호중 대부분 (78.3 %)은 그 소유면적이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6 호 (8.7 %)는 오히려 면적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고 減少가 일어난 호수는 9 호 (13.0 %)에 불과해 가설에서 상정한 경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면, 왜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농가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변화와 자료해석상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收縮期의 농가자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要因은 勞動力의 감소와 노쇠화, 그리고 자녀들의 分家에 따르는 費用支出과 農地贈與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代를 잇는 아들들이 분가 전에 대부분 집에 남아 영농에 참여하여 農家の 資産增殖에 기여하였으며, 따라서 分家時에는 새로운 가계 (즉 農家)를 성립 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를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당연시 되었기 때문이다.

表 4 - 12 收縮期 變化類型의 農家戶數

단위 : 戶 (%)

TA87-5-28

區 分	近 郊	平 野	中 間	山 間	計
A - I	2	1			3
A - II	9	7	1	11	28
A - III		3	2	2	7
B - I					
B - II	4	1	2	2	9
B - III				1	1
C - I	1				1
C - II	1	4	5	1	11
C - III		1			1
D - I	1			1	2
D - II	3	2	1		6
計	21(100.0)	19(100.0)	11(100.0)	18(100.0)	69(100.0)
I 型	4(19.0)	1(5.3)	0(-)	1(5.6)	6(8.7)
II 型	17(81.0)	14(73.7)	9(81.8)	14(77.8)	54(78.3)
III 型	0(-)	4(21.1)	2(18.2)	3(16.7)	9(13.0)

表 4 - 13 收縮期 變化 分析農家の 年齡分布

TA87-5-29

단위 : 戶(%)

區 分	I 型	II 型	III 型	計
56 ~ 60		14	3	17 (24.6)
61 ~ 65		24		24 (34.8)
66 ~ 70	3	11	3	17 (24.6)
71 ~ 75	2	4	2	8 (11.6)
76 세 이 상	1	1	1	3 (4.3)
計	6	54	9	69 (100.0)

그러나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아들들이 대부분 都市로 빠져 나감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教育費 負擔 등으로 선행하여 이루어졌고, 새로운 가계의 출발 시에도 非農家이기 때문에 바로 농지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해체기에 있어서 농가의 承繼가 단절됨으로써 농지가 비농민자녀에게 상속되는 不在地主의 증가가 주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⁹⁾

다음에 자료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경영주 연령이 55 세때(收縮期)의 소유면적이 0 으로 더 이상 감소할 수 없는 농가가 있다는 것이다. D-II型 6호를 별도로 하면 C-II型 10 호중 7 호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분석대상 농가중 상당수가 수축기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65 세 이하의 연령으로 아직 변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유면적이 확대된 6戶의 개황은 <表 4 - 14 >와 같다. 平野마을의 2번 농가를 제외하면 증가면적은 500 ~ 1,000 평이고 경영주가 60 代에 확대가 이루어졌다. 확대한 재원 또는 사유로는 1호가 被贈, 2호가 農外活動收入, 1 호는 영농수입과 출타자녀 송금으로 충당되어, 전체적으로는 농업경영의 성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減少類型(A - III, B - III, C - III)에서의 면적변화는 총감소가 호당 2,306 평, 증가가 189 평으로 평균 2,117 평의 純減少가 있었다. 감소원인으로는 子女分家が 7,000

9)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가능성은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산업화 이후의 상속과정과 그에 따른 부재지주화 경향의 전개과정은 앞으로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실증적으로 밝혀야 할 과제이다.

表 4-14 收縮期 I 型農家の 概況

TA87-5-30

農家番號	經營主 年 齡	所 有 面 積 (坪)			增加時 年 齡	備 考
		55세 때	현 재	증가면적		
近郊 4번	68	600	1,100	500	61	장남이 같이 영농, 농외활동(단청)
近郊 5번*	84	1,000	2,000	1,000	69	처남에게 증여받음
近郊 10번	70	0	900	900	66	
近郊 27번*	73	1,200	2,100	900	63	
平野 2번	66	2,800	6,350	3,550	57,59,65	출타자녀 송금, 영농수입, 사채
山間 21번	71	0	900	900	56,65	농외수입(주막)

* 이 농가들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출타자녀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表 4-15 收縮期 III型農家の 農地減少原因

TA87-5-31

단위 : 件, 坪(%)

區 分	件 數	面 積
子 女 分 家	3	7,000 (33.7)
教 育 費	4	4,900 (23.6)
疾 病	3	3,500 (16.9)
營 農 失 敗	-	- (-)
事 業 失 敗	2	2,500 (12.0)
其 他	2	2,850 (13.7)
計	14	20,750 (100.0)

* 머슴 분가시 새경 지불(10년간 고용, 1,500평 줌), 철도부지로 매도 1건(1,350평)

평(33.7%)으로 가장 크나 3件에 불과하며 그 밖에 教育費負擔, 疾病, 農外事業失敗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총 분석대상농가 69호의 경영주 연령대별 평균 증감면적은 <表 4-16>과 같다. 68~73세 사이에 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경향이 없으며 평균 감소면적도 총 453평으로 작은 편이다.

表 4-16 收縮期の 年平均 農地増減

단위 : 坪

TA87-5-32

經營主年齡	年平均増減面積	經營主年齡	年平均増減面積
56 ~ 58	△ 32	68 ~ 70	△ 67
59 ~ 61	5	71 ~ 73	△ 46
62 ~ 64	△ 19	74 세 이상	0
65 ~ 67	8	計	△ 453

수축기의 변화를 요약하면 농지소유규모가 감소된 농가도 있지만, 오히려 증가한 농가도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는 소유규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소유규모의 축소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産業化와 진행과 더불어 자녀들이 대부분 離村하여 도시에서 가구를 형성함으로써 父의 생존시에 分家子女들에 대한 農地分割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現經營主의 先代에 있어서 分割相續으로 規模의 縮小가 일어났던 것과 대비된다. 현재의 노령농가들이 은퇴하게 됨에 따라 그 소유농지가 非農民子女들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不在地主의 증가, F-사이클 단절현상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¹⁰⁾

補論

農家の 出發形態

농가의 출발형태는 흔히 생각하듯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傳統的 農耕社會에 있어서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자라 父代를 승계하든지, 아니면 分家해 새로운 가구를 창출하는 경우에도 마을내에서 농가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外地에 나가 가구를 형성하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人口流動이 많아지면서 성장하는 도시 공업부문으로의 취업을 위해 離村하는 등 가구창출의 형태가 다양해 졌으며, 이에 따라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의 영농시작

10) 1985년 조사에 의하면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 52호중 영농후계자가 있다고 답변한 농가는 15호(28.8%)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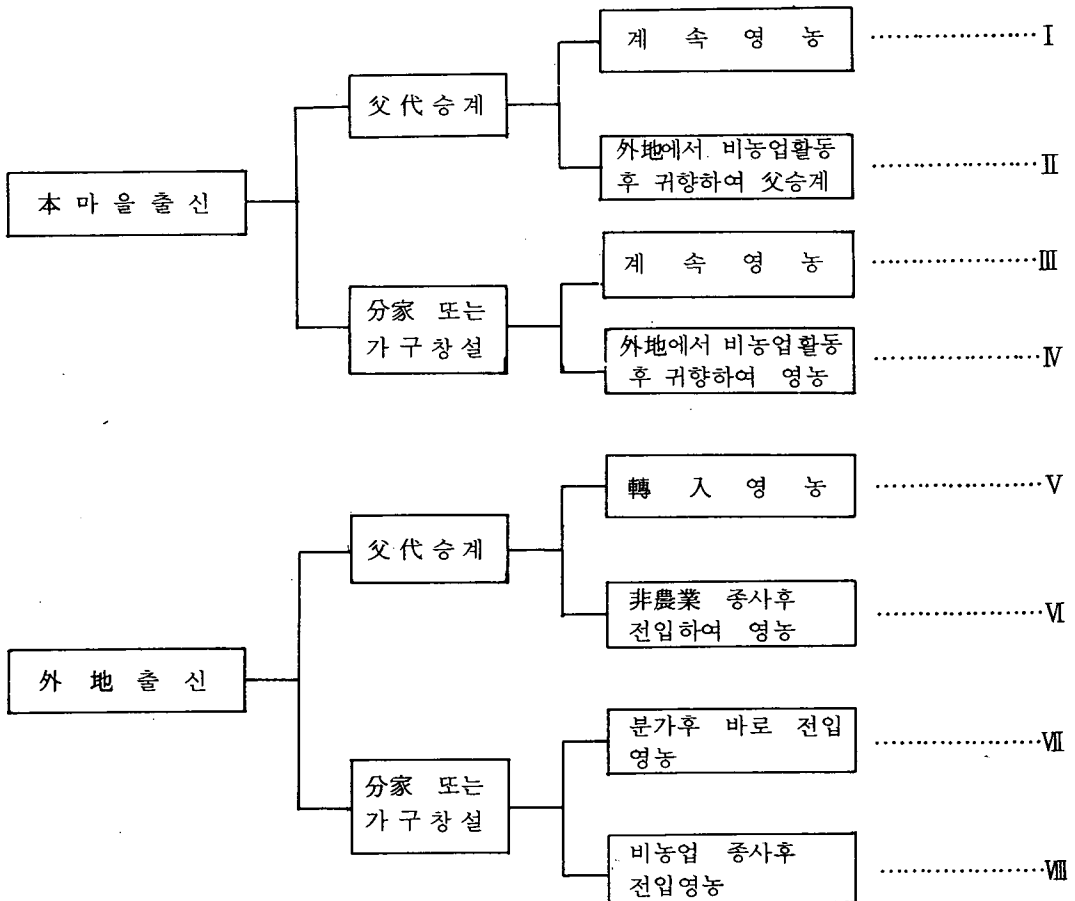
경위도 다양화되어 있다. 산업화 요인 이외에도 日帝末期와 6.25 동란을 거치는 동안의 정치·사회적 변동도 이러한 현상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본 補論에서는 농가출발시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고, 또 출발시의 農地所有面積을 비교해 봄으로써 農家の 「F-사이클」 출발점의 조건을 살펴본다.

농가의 출발형태는 다음 3기준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며, <圖 4 - 6>과 같이 8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출생 및 성장지역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인가.
- ② 父代의 農家를 승계하였는가, 아니면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창출하였는가.
- ③ 영농에 종사하기 이전에 비농업 활동을 하였는가.

圖 4 - 6 農家出發形態의 區分



4개마을의 총농가 181¹¹⁾호의 출발형태를 구분한 결과는 <表 4 - 17>과 같다.

전체적으로 본마을 출신으로 父代를 승계해 계속 영농에 종사한 가구(Ⅰ型)는 89호(49.2%), 분가해 계속 영농에 종사한 가구(Ⅲ型)는 37호(30.4%)로, 나머지 55호(30.4%)의 농가가 거주지 또는 직업의 변화를 거쳐 현거주 마을에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마을 출신으로 외지에서 비농업에 종사하다 귀향하여 농사를 짓는 가구(Ⅱ, Ⅳ型중 1호 제외)는 17호(9.4%)이며, 외지에서 승계(또는 분가)후 바로 전입해와 농사를 짓는 가구(Ⅴ, Ⅶ)는 22戶(12.2%)이다.

한편, 마을별로는 평야마을이 외지출신(17戶, 34.7%)이나 轉望家口(13戶, 26.5%)의 비율이 가장 높아 거주지 및 직업이동이 많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농가의 출발시 평균 농지소유면적은 1,339 평에 불과하고 86.8%가 1.0ha 미만의 영세소농층으로 그 조건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表 4 - 17 農 家 의 出 發 形 態

TA87-5-33

단위 : 戶(%)

區 分		近 郊	平 野	中 間	山 間	計
本 마 을 출 신	Ⅰ	27(52.9)	16(32.7)	15(45.5)	31(64.6)	89 (49.2)
	Ⅱ	3(5.9)	4(8.2)	3(9.1)	0(-)	10 (5.5)
	Ⅲ	12(23.5)	11(22.4)	9(27.3)	5(10.4)	37 (20.4)
	Ⅳ	3(5.9)	1(2.0)	0(-)	4(8.3)	8*(4.4)
	小 計	45(88.2)	32(65.3)	27(81.8)	40(83.3)	144 (79.6)
外 地 출 신	Ⅴ	1(2.0)	4(8.2)	1(3.0)	2(4.2)	8 (4.4)
	Ⅵ	0(-)	0(-)	0(-)	0(-)	0 (-)
	Ⅶ	5(9.8)	5(10.2)	2(6.1)	2(4.2)	14 (7.7)
	Ⅷ	0(-)	8(16.3)	3(9.1)	4(8.3)	15 (8.3)
	小 計	6(11.8)	17(34.7)	6(18.2)	8(16.7)	37 (20.4)
計		51(100.0)	49(100.0)	33(100.0)	48(100.0)	181 (100.0)

*이중 1호는 분가시 외지로 나가 농사를 짓다가 다시 귀향한 가구임.

11) 이중에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과거 영농사실이 있던 가구도 포함된다.

表 4 - 18 農家出發時 農地所有面積

단위 : 戶 (%)

TA87-5-34

區 分	本 마을 출 신 父승계 (I , II)	本 마을 출 신 분가농업 (III)	전입 또는 전업 (IV ~ VIII)	計
無 耕 地	12(12.1)	11 (29.7)	24 (53.3)	47 (26.0)
0.5 ha 미만	39(39.4)	15 (40.5)	15 (33.3)	69 (38.1)
0.5 ~ 1.0	28(28.3)	9 (24.3)	4 (8.9)	41 (22.7)
1.0 ~ 1.5	15(15.2)	2 (5.4)	2 (4.4)	19 (10.5)
1.5 ~ 2.0	1(1.0)	0 (-)	0 (-)	1 (0.6)
2.0 ha 이상	4(4.0)	0 (-)	0 (-)	4 (2.2)
計	99(100.0)	37 (100.0)	45 (100.0)	181 (100.0)
平均所有面積 (坪)	1,783	1,014	630	1,339

類型別로는 本마을 출신으로 父代의 農家를 승계한 경우 (I , II型)가 소유규모가 가장 크나 이 유형에서도 농지를 상속받지 못한 농가가 12 호 존재한다. 반면 本마을 출신이면서 外地로 분가해 나갔다가 다시 轉入하였거나 外地에서 전입해 온 가구 (VI, V, VII, VIII型)는 45 호중 절반이 넘는 24 호가 소유농지 없이 출발하였으며, 평균 소유면적도 630 坪에 불과해 가장 심한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이 유형에서 농지를 소유한 상태로 출발한 농가는 21 호인데 이중 10 호는 本人이 구입해서 영농에 참여한 경우이고 9 호는 父에게서 상속, 그리고 母와 兄에게서 증여받은 경우가 각각 1호씩 있다

補論 2

分析除外農家の 變化

世代内の 동태적 변화 분석에서 제외된 43 호의 제외사유는 <表 4 - 1>과 같다. 이들은 가족의 생애주기 중간에 비농업부문에 장기간 종사하였거나, 영농에 참여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 F - 싸이클 」가설을 검증하는 사례로서 부적절한 경우이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농가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表 4 - 19 출발후 10年 미만 農家の 動態的 變化 區分

TA87-5-35

區 分	증 가 유 형	유 지 유 형	감 소 유 형	계
戶 數(%)	6 (22.2)	18 (66.7)	3(11.1)	27 (100.0)
平均增減面積(坪)	1,008	0	△ 960	117
出發時年 齡	28.0	28.6	30.3	28.7
平均營農年數(年)	5.7	5.5	5.7	5.6

가. 농가출발 후 10년 미만인 가구

이 유형은 농가의 싸이클이 시작된지 10년 미만으로 아직 그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앞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었다. 총 27호중 6호가 출발시 면적보다 증가하였으며, 3호는 감소하였고 18호는 변동이 없었다.

증가유형에 있어서 평균 증가면적은 1,008평이며, 감소유형은 감소원인으로는 영농실패가 2건(축산, 1,680평)이고 분가동생에게 증여한 것이 1건(1,200평)이었다.

나. 40세 이후에 영농에 참여한 가구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가구는 총 10호이다. 그중 6호는 비농업에서 전업한 가구이며, 3호는 비농업에 종사하다가 父代의 농가를 승계한 경우, 1호는 父와 같이 농사를 지었으나 경영권 승계가 늦은(현 경영주 43세때) 경우이다. 이 농가들의 변화내용은 <表 4 - 20>과 같다.

父代를 승계한 가구 4호의 출발시 평균소유면적은 1,450평으로 이중 1호는 확장에 면적이 감소하고(동생에게 증여), 3호는 소유면적이 불변이었으며, 수축기에는 3호 모두 소유면적에 변화가 없었다.(1호는 경영주 현재 연령이 51세임).

轉業한 농가는 6호중 4호가 무경지 농가로 출발하였으며, 2호는 외지에서 비농업활동(철도청 직원, 인쇄공)으로 축적한 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이다(소유면적 각각 700평, 4,000평). 무농지로 출발한 4호중 2호는 영농시작후(57세, 62세때)약간씩의 농지를 구입하였다.

表 4 - 20 40歲 以後 營農參與農家の 動態的 變化

단위 : 戶, 坪

TA87-5-36

區 分		父代承繼家口	轉業農家	計
戶 數		4	6	10
擴張期 增減 類型別 戶數	增 加	0	0	0
	維 持	3	5	8
	減 少	1	1	2
擴張期 平均增減面積		△ 305	0	△ 135
收縮期 增減 類型別 戶數	增 加	0	2	2
	維 持	3	4	7
	減 少	0	0	0
收縮期 平均增減面積		0	385	257

다. 10년 이상 外地生活을 한 家口

이 유형은 장기간의 외지생활로 인해 「F-사이클」에 따른 변화가 단절된 가구들이다. 이에 속하는 5호중 離村 전보다 귀향시 소유면적이 증가한 농가가 2호, 감소한 농가가 1호이며, 1호에서는 변화가 없었다(전후 모두 無耕地). 평균외지생활연수는 20.2년이었으며, 외지생활 전후에 평균 260평의 감소가 있었다. 移住로 인한 변화를 제외하면 확장기에서는 증가가 1호, 감소가 1호(동생분가로 2,300평 감소). 불변이 3호이며, 수축기에는 증가 2호, 불변이 3호이다.

라. 여자 경영주 가구

이 가구는 남자 경영주가 18세때 무농지로 출발하였으나 22세때 사망하여 부인이 가계를 꾸려온 경우이다. 경영주 사망후 7년간 외지생활을 하다 귀향하여 농사를 지어 1,500평까지 소유농지를 증가시켰으며, 시동생에게 800평의 농지를 주어 분가시킨 경우이다.

第 5 章

要約 및 結論

1. 要約

본 연구에서는 「F-사이클 假說」중 세대간의 農地相續에 따르는 小農의 再創出과정과 世代內의 動態的 變化를 중심으로 4개 조사마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가의 과거 자료를 사례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農地의 相續過程과 小農의 創出

① 農地相續類型

○ 한국 농촌에 있어서 농가의 세대간의 승계과정에서의 相續慣行은 一子相續과 分割相續이 공존하여 왔다. 父代의 상속농지가 있었던 108件 가운데 아들이 1명이어서 一子相續을 한 경우가 31件(28.7%), 아들이 2명 이상인데도 一子相續을 한 경우는 42件(38.9%), 多子分割相續이 35件(32.4%)으로 아들이 한명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자상속과 분할상속은 각각 절반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 상속관행을 父代의 상속규모별로 보면, 1.0ha 미만의 영세소농층에서는 一子相續(78.0%)이, 中大農層에서는 分割相續(88.9%)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자녀세대의 출발시 가구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를 나누어 주는 분할상속이 理想型이었지만, 영세소농의 경우 분할로 인해 代를 잇는 가계(宗家)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위험을 피하려는 의식이 작용해 온 때문으로 보인다.

○ 이와같은 상속관행은 中大農層에서 축적된 농지가 子代에 분할되지 않고 단독승계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해 새로 출발되는 子代農家の 농지소유규모는 父代의 축적규모에 관계없이 零細化된다는 것이다.

○ 상속시기별로 본 상속관행은 큰 변화가 없다.

② 相續을 통한 小農의 創出

○ 農家戶數는 父代 130 호에서 子代에는 183 호로 40.8% 증가하였다. 이중 농지상속이 있었던 경우만을 보면 父代 108 호에서 농지상속이 일어나 농지를 상속받은 농가 132 호와 상속받지 못한 농가 14 호가 창출되었다.

○ 농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농가호수의 증가와 함께 子代農家の 농지소유규모 영세화가 진행되었다. 상속시 父代農家の 평균 소유면적 2.066 평에서 子代農家の 출발시에는 1,304 평(父代의 63.1%)으로 감소하였으며, 88.7%가 1.0 ha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출발하고 있다. 즉 상속과정에서 새로 창출되는 농가는 父代에 축적된 농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출발함으로써 農村內部에서 끊임없이 小農이 再創出되는 메카니즘을 이루어 온 것이다.

○ 한편 子代중 134 호(父代一戶當 1.03 호)가 非農家化하였는데, 이중 33 호가 농지를 상속받음으로써 不在地主化하였다. 이들이 상속받은 총면적은 35,608 평으로 총상속농지 268,580 평의 13.3%에 달한다.

나. 世代內에 있어서의 動態的 變化

① 擴張期的 變化

○ 「F-사이클 假說」에서는 농가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농가출발시부터 경영주가 55 세 되는 때까지의 기간을 확장기라 하여 所有農地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그러나, 실제 현실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총 138 호중 농지의 확대가 일어나는 A型은 70 호(50.7%)에 불과하고, 출발시 면적을 유지하는 농가(B, D型)가 46 호(33.3%), 오히려 감소한 농가(C型)가 22 호(15.9%)로 나타나 가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이와같은 결과는 「F-사이클 假說」이 전제하고 있는 전제조건들이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변질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때문으로 보인다. B,C,D型중 현실적으로 농지감소가 일어난 경우 그 감소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및 형제의 분가에 따른 농지증여로 인한 감소는 13件에 12,753 평으로 총 감소면적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개별농가의 가족사이클이 평균치와 차이를 갖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F-사이클 가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자녀의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감소가 12件에 12,600 평(19.3%)이다. 산업화에 따른 이혼과 그 준비를 위한 教育費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농가의 농지확대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세째, 농외사업이나 都市移住의 실패로 인한 농지감소는 8건에 19,900 평(30.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네째, 다른 감소원인으로는 疾病이 6件에 9,700 평(14.9%), 營農失敗가 5件에 4,800 평(7.4%) 등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의료기회의 확대와 상업적농업의 진행은 앞으로도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원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같이 다양한 유형에도 불구하고 확장기에는 평균적으로 1,377 평이 증가하고 667 평이 감소하여 670 평의 純增加가 있었다. 확장기에는 여러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農地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收縮期의 變化

○ 경영주 연령 55세 이후의 收縮期에서는 勞動力의 감소와 노쇠화, 그리고 자녀들의 分家에 따른 비용지출과 農地贈與로 농지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 그러나, 자료분석에 의하면 총 69호중 대부분(78.3%)이 소유면적에 변화가 없으며, 8.7%는 오히려 면적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고 감소가 일어난 농가비율은 13.0%에 불과해 가설에서 상정한 경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 수속기에 소유규모의 감소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産業化의 진행과 더불어 자녀들이 대부분 離村하여 도시에서 가구를 형성함으로써 父의 생존시에 分家子女들에 대한 農地分割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2. 結論 및 政策的 含蓄

家族經濟로서 農家經濟가 갖는 구조적 성격의 하나는 농가경제가 가족의 형성과 성장, 쇠퇴, 소멸에 따라 변화하는 「F-사이클」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F-사이클」에 따른 農家資産의 承繼模型과 産業化의 影響으로 인한 「F-사이클」의 세대 간 단절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農家賃貸借과 不在地主의 증가, 농가호수의 全階層의 減少, 農家の 지속적인 資産蓄積의 제약, 小農의 再創出 등의 제현상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농가경제에 내재하고 있는 「F-사이클」은 농가경제를 企業經濟와 구분시키는 農業經濟原理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本 調査研究에서 부분적으로 검증된 「F-사이클 假說」이 제시하는 政策的 意味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表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농가의 高齡化는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F-사이클」상의 收縮期, 解體期에 접어든 농가가 많아 「F-사이클」의 斷絶로 인한 農家戶數의 절대적 감소와, 「F-사이클」과 分割相續制라는 사회제도가 일으키는 임대차, 不在地主의 증가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둘째, 뿐만 아니라 「F-사이클」은 구조적으로 농가자산의 세대 간 승계과정에서 分割相續에 의한 농지의 細分化和 零細化를 촉진시켜 동태적인 자산축적을 제약한다. 따라서, 농가경제가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이루고 규모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F-사이클」에 의한 농가자산의 승계과정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社

表 5 - 1 農家經營主의 年齡別 構成比 變化

단위 : %

연 도	34세 이하	35 ~ 44	45 ~ 54	55세 이상
1960	23.0	27.0	26.0	24.0
1970	20.8	27.7	25.8	25.7
1980	13.1	25.1	26.0	32.7
1985	10.3	19.3	32.3	38.1

資料 : 農水産部, 農業센서스, 각연도

會制度의 개선 내지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농가경제의 動態的 成長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지의 分割相續의 규제와 一子相續制의 법적 장치, 그리고 非農民子女의 농지상속이나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相續稅法이나 財産稅法 등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在村農家들의 실질적인 농지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장기저리 농지구입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제, 확장기의 농지확대 제약요인으로는 子女 및 兄弟의 분가, 교육비 부담, 질병치료, 農外事業失敗, 영농실패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의 순조로운 자산축적을 위해서는 農村醫療, 教育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農外事業과 商業的 營農에 대한 기술·경영·금융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농가경제가 「F-사이클」상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생산활동의 목표와 意思決定의 양태에 농가간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점이다. 예를들어 機械化나 農外所得의 증대 문제는 수축기 이후의 高齡農家들에게는 그 의미가 거의 없을 것이며, 상업적 영농을 목표로 새로운 품종, 기술을 도입하는 일도 은퇴를 눈앞에 둔 고령농가엔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정책의 目標集團(target group)을 설정하고 政策需要를 예측하는데 있어 단순히 경지규모나 소득수준에 의한 농가구분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우며, 農家가 현재 「F-사이클」상의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느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F-사이클 假說」은 농가의 類型別 性格(崔洋夫外, 1983 : 149-164)에 따른 정책추진을 통하여 농업정책의 實效性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농가경제가 「F-사이클」상에 위치하는 단계에 따라서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意思決定과 行動樣式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더 분석되어야 할 연구가설로 남아있다.

附錄： 1. 附 表

附表1 相續類型別件數

단위: 戶

TA87-5-37

區 分		都市近郊	平 野	中 間	山 間	計
I 型 (獨子의 一子相續)		9	3	6	13	31
II型 (多子中 一子相續)	2 子	3	4	2	6	15
	3 子	5	3	3	5	16
	4子 이상	3	2	4	2	11
III型 (一子承繼後 分割)	2 子	0	3	0	0	3
	3子중 2子	1	0	0	0	1
	3子중 3子	0	1	2	0	3
	4子이상중 일부	2	1	0	0	3
	4子이상 전원	0	0	0	0	0
IV型 (多子分割相續)	2 子	0	6	0	2	8
	3子중 2子	1	0	1	1	3
	3子중 3子	4	0	1	1	6
	4子이상중 일부	1	1	2	1	5
	4子이상 전원	1	1	1	0	3
V型(無 相 續)		5	9	3	5	22
計		35	34	25	36	130

附表2 農地相續規模別 相續類型 比較(近郊마을)

TU87-5-38

단위: 件 (%)

區 分	0.5 ha 미만	0.5 ~ 1.0	1.0 ~ 1.5	平均所有面積(坪)
一子相續(II)	6(54.5)	5(71.4)	-	1,391
分割相續(III,IV)	5(45.5)	2(28.6)	3(100.0)	1,845

附表 3 農地相續規模別 相續類型 比較(平野마을)

TP87-5-1

단위 : 件(%)

區 分	0.5 ha미만	0.5~1.0	1.0~1.5	1.5~2.0	2.0 ha이상	平均所有面積(坪)
一子相續(Ⅱ)	5(100.0)	4(57.1)	-	-	-	1,504
分割相續(Ⅲ, Ⅳ)	-	3(42.9)	6(100.0)	2(100.0)	2(100.0)	4,035

附表 4 農地相續規模別 相續類型 比較(中間마을)

TH87-5-1

단위 : 件(%)

區 分	0.5 ha미만	0.5~1.0	1.0~1.5	1.5~2.0	2.0 ha이상	平均所有面積(坪)
一子相續(Ⅱ)	4(100.0)	3(75.0)	1(33.3)	-	1(25.0)	2,526
分割相續(Ⅲ, Ⅳ)	-	1(25.0)	2(66.7)	1(100.0)	3(75.0)	5,729

附表 5 農地相續規模別 相續類型 比較(山間마을)

TM87-5-1

단위 : 件(%)

區 分	0.5 ha미만	0.5~1.0	1.0~1.5	1.5~2.0	2.0 ha이상	平均所有面積(坪)
一子相續(Ⅱ)	8(100.0)	4(100.0)	1(33.3)	-	-	1,382
分割相續(Ⅲ, Ⅳ)	-	-	2(66.7)	2(100.0)	1(100.0)	5,327

附表 6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近郊마을)

TU87-5-2

단위 : 件(%)

區 分	1945년 이전	1945~59	1960~69	1970~79	1980년 이후
一子相續(Ⅱ)	3(60.0)	3(100.0)	3(42.9)	2(50.0)	0(-)
分割相續(Ⅲ, Ⅳ)	2(40.0)	0(-)	4(52.1)	2(50.0)	2(100.0)
計	5(100.0)	3(100.0)	7(100.0)	4(100.0)	2(100.0)

附表 7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平野마을)

TP87-5-2

단위 : 件(%)

區 分	1945년 이전	1945~59	1960~69	1970~79	1980년 이후
一子相續(Ⅱ)	0(-)	4(40.0)	3(50.0)	2(40.0)	0(-)
分割相續(Ⅲ, Ⅳ)	1(100.0)	6(60.0)	3(50.0)	3(60.0)	0(-)
計	1(100.0)	10(100.0)	6(100.0)	5(100.0)	0(-)

附表 8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中間마을)

TH87-5-2

단위 : 件(%)

區 分	1945년 이전	1945~59	1960~69	1970~79	1980년 이후
一子相續(Ⅱ)	1(100.0)	3(60.0)	2(50.0)	2(50.0)	1(50.0)
分割相續(Ⅲ, Ⅳ)	0(-)	2(40.0)	2(50.0)	2(50.0)	1(50.0)
計	1(100.0)	5(100.0)	4(100.0)	4(100.0)	2(100.0)

附表 9 時期別 相續類型 比較(山間마을)

TM87-5-2

단위 : 件(%)

區 分	1945년 이전	1945~59	1960~69	1970~79	1980년 이후
一子相續(Ⅱ)	0(-)	2(100.0)	6(66.7)	3(60.0)	2(100.0)
分割相續(Ⅲ, Ⅳ)	0(-)	0(-)	3(33.3)	2(40.0)	0(-)
計	0(-)	2(100.0)	9(100.0)	5(100.0)	2(100.0)

附表10 子代の 職業選擇(近郊마을)

TU87-5-3

단위 : 명(%)

父代の 總農家數	總子數	상속받은 子		兄에게서 증여 받음(農家)	상속받지 못한 子		
		農 家	非農家		農 家	非農家	不 明
35	91 (100.0)	37 (40.7)	10 (11.0)	0 (-)	10 (11.0)	34 (37.4)	0 (-)
父代1戶當	2.60	1.06	0.29	0.00	0.29	0.97	0.00

附表11 子代の 職業選擇(平野마을)

TP87-5-3

단위 : 명, (%)

父代の 總農家數	總子數	상속받은 子		兄에게서 증여 받음(農家)	상속받지 못한 子		
		農 家	非農家		農 家	非農家	不 明
34	92 (100.0)	31 (33.7)	13 (14.1)	1 (1.1)	20 (21.7)	23 (25.0)	4 (4.3)
父代1戶當	2.71	0.91	0.38	0.03	0.59	0.68	0.12

附表12 子代の 職業選擇 (中間마을)

TH87-5-3

단위 : 명(%)

父代の 總農家數	總子數	상속받은 子		兄에게서 증여 받음 (農家)	상속받지 못한 子		
		農 家	非農家		農 家	非農家	不 明
25	69 (100.0)	26 (37.7)	8 (11.6)	0 (-)	12 (17.4)	21 (30.4)	2 (2.9)
父代1戶當	2.76	1.04	0.32	0.00	0.48	0.84	0.08

附表13 子代の 職業選擇 (山間마을)

TM87-5-3

단위 : 명(%)

父代の 總農家數	總子數	상속받은 子		兄에게서 증여 받음 (農家)	상속받지 못한 子		
		農 家	非農家		農 家	非農家	不 明
36	75 (100.0)	38 (50.6)	2 (2.7)	2 (2.7)	9 (12.0)	23 (30.6)	1 (1.3)
父代1戶當	2.06	1.06	0.06	0.06	0.25	0.64	0.03

附表14 世代間の 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 (近郊마을)

TU87-5-4

단위 : 戶 (%)

區 分 農 地 所有規模	父 代 (상속면적)	子 代 (상속 시)		
		農 家	非 農 家	
			상속받음	무 상속
無 耕 地	5 (14.3)	10 (21.3)		34
0.5 ha미만	17 (48.6)	29 (61.7)	9 (90.0)	
0.5 ~ 1.0	9 (25.7)	7 (14.9)	1 (10.0)	
1.0 ~ 1.5	3 (8.6)	0 (-)		
1.5 ~ 2.0	0 (-)	0 (-)		
2.0 ha이상	1 (2.9)	1 (2.1)		
計	35 (100.0)	47 (100.0)	10 (100.0)	34
平均所有面積 (坪)	1,439	929	671*	-

* 비농민자녀가 상속받은 총면적은 6,710평으로 총상속면적의 13.3%임.

附表15 世代間の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平野마을)

TP87-5-4

단위 : 戶(%)

區 分 農地 所有規模	父 代 (상속면적)	子 女 (상 속 시)		
		農 家	非 農 家	
			상속받음	무 상 속
無 耕 地	9(26.5)	17(34.7)		23
0.5 ha미만	7(20.6)	14(28.6)	9(69.2)	
0.5 ~ 1.0	7(20.6)	11(22.4)	4(30.8)	
1.0 ~ 1.5	5(14.7)	6(12.2)		
1.5 ~ 2.0	2(5.9)	0(-)		
2.0 ha이상	4(11.8)	1(2.0)		
計	34(100.0)	49(100.0)	13 (100.0)	23
平均所有面積(坪)	2,219	1,357	1,323*	-

*비농민자녀가 상속받은 총면적은 17,200평으로 총 상속면적의 22.8%임.

附表16 世代間の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中間마을)

TH87-5-4

단위 : 戶 (%)

區 分 農地 所有規模	父 代 (상속면적)	子 女 (상 속 시)		
		農 家	非 農 家	
			상속받음	무 상 속
無 耕 地	3(12.0)	12(31.6)		21
0.5 ha미만	5(20.0)	7(18.4)	5 (62.5)	
0.5 ~ 1.0	6(24.0)	11(28.9)	3 (37.5)	
1.0 ~ 1.5	7(28.0)	7(18.4)		
1.5 ~ 2.0	1(4.0)	0(-)		
2.0 ha이상	3(12.0)	1(2.6)		
計	25(100.0)	38(100.0)	8 (100.0)	21
平均所有面積(坪)	3,148	1,705	1,363*	-

*비농민자녀가 상속받은 총면적은 10,900평으로 총 상속면적의 13.8%임.

附表17 世代間的 承繼에 따른 農地所有規模分布의 變化(山間마을)

TM87-5-4

단위 : 戶 (%)

區 分 農地 所有規模	父 代 (상속면적)	子 女 (상속 시)		
		農 家	非 農 家	
			상속받음	무 상 속
無 耕 地	5 (13.9)	9(18.4)		23
0.5 ha미만	14 (38.9)	19(38.8)	2(100.0)	
0.5 ~ 1.0	10 (27.8)	17(34.7)		
1.0 ~ 1.5	3 (8.3)	3(6.1)		
1.5 ~ 2.0	3 (8.3)	1(2.0)		
2.0 ha이상	1 (2.8)	0(-)		
計	36 (100.0)	49(100.0)	2(100.0)	23
平均所有面積(坪)	1,780	1,300	400*	-

* 비농민자녀가 상속받은 총 면적은 800 평으로 총 상속면적의 0.6 %임.

附表18 父代의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近郊마을)

TU87-5-5

단위 : 戶

區 分	父代戶數	子 代 戶 數	子代農家の 所有規模
無 耕 地	5	비농가 4 농 가 8	10
0.5 ha미만	17	비농가 23 농 가 19	29
0.5 ~ 1.0	9	비농가 14 농 가 11	7
1.0 ~ 1.5	3	비농가 3 농 가 8	0
1.5 ~ 2.0	0		0
2.0 ha이상	1	농 가 1	1

附表19 父代の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 (平野마을)

TP87-5-5

단위: 戶

區 分	父代戶數	子 代 戶 數	子代農家の 所有規模
無 耕 地	9	비농가 11 농 가 14	13 → 17 1 → 14 4 → 11 7 → 6 2 → 5 5 → 6 2 → 6 1 → 0 2 → 0 2 → 0 1 → 1
0.5 ha미만	7	비농가 5 농 가 11	
0.5 ~ 1.0	7	비농가 9 농 가 7	
1.0 ~ 1.5	5	비농가 4 농 가 9	
1.5 ~ 2.0	2	비농가 2 농 가 3	
2.0 ha이상	4	비농가 5 농 가 5	

附表20 父代の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 (中間마을)

TH87-5-5

단위: 戶

區 分	父代戶數	子 代 戶 數	子代農家の 所有規模
無 耕 地	3	비농가 1 농 가 6	6 → 12 3 → 7 5 → 11 3 → 11 1 → 11 5 → 7 1 → 7 1 → 7 4 → 0 2 → 0 1 → 1
0.5 ha미만	5	비농가 3 농 가 8	
0.5 ~ 1.0	6	비농가 10 농 가 9	
1.0 ~ 1.5	7	비농가 5 농 가 7	
1.5 ~ 2.0	1	비농가 3 농 가 1	
2.0 ha이상	3	비농가 6 농 가 7	

附表21 父代の 相續面積規模에 따른 子代農家の 規模分布 (山間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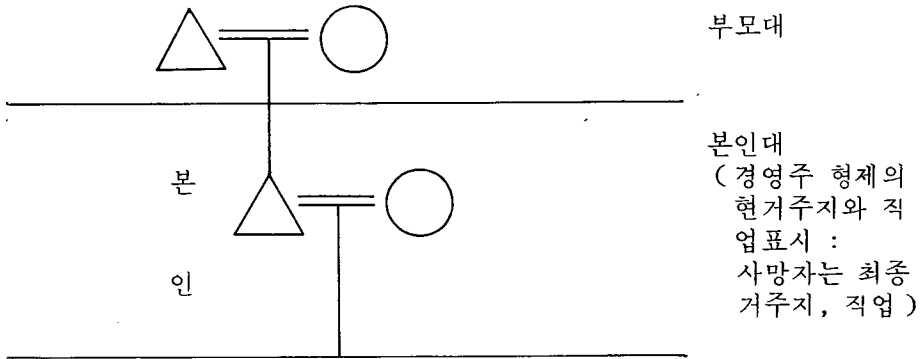
TM87-5-5

단위: 戶

區 分	父代戶數	子 代 戶 數	子代農家の 所有規模
無 耕 地	5	비농가 1 농 가 9	7 2 9
0.5 ha미만	14	비농가 13 농 가 14	14 2 19
0.5 ~ 1.0	10	비농가 9 농 가 12	2 10 1 17
1.0 ~ 1.5	3	비농가 1 농가가 5	2 1 2 3
1.5 ~ 2.0	3	비농가 0 농 가 5	3 1 1 1
2.0 ha이상	1	비농가 1 농 가 4	0

2. 調 査 票

(1) 가계도 (경영주 부모와 형제, 자녀대의 가계도 작성)



손자대

범 레	
△ : 남자	○ : 여자
△안에 연령기입, (사망자는 출생년도 및 사망연도)	
분가자는 △ 아래에 “ ____년도 분가 ”로 표시.	
본인중심으로 동거가족을 식으로 표시.	

(2) 영농출발시점의 형태

- | | | |
|--------|-----------------|---------|
| ① (Ⅰ형) | 분가 | → 3번 문항 |
| ② (Ⅱ형) | 부승계, 미분가 형제있음 | → 4번 문항 |
| ③ (Ⅲ형) | 부승계, 미분가 형제없음 | → 4번 문항 |
| ④ (Ⅳ형) | 부승계, 독자 | → 5번 문항 |
| ⑤ (Ⅴ형) | 타직업 종사후 농업으로 전업 | → 6번 문항 |
| ⑥ (Ⅵ형) | 영농경험 없음 | |

※ 법적 분가여부(장남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농사를 직접 물려받았으면
부 승계로 간주한다.

(3) (I 형에서) 분가시 상황

- ① 분가년도 _____ 년
만 _____ 세
- ② 분가시 경지면적 총 _____ 평 임야 _____ 평
논 _____ 평
밭 _____ 평
- ③ 추후(부사망시) 상속 경지면적
_____ 년 총 _____ 평 임야 _____ 평
논 _____ 평
밭 _____ 평

(4) (Ⅱ, Ⅲ형에서) 승계시 상황

① 승계년도 _____ 년 본인 만 _____ 세

② 부 사망년도 _____ 년

③ 경지의 배분

단위 : 평

		논		밭		임 야	
		분가시배분	부사망시상속	분가시배분	부사망시상속	분가시배분	부사망시상속
분 가 형 제 상 속	1						
	2						
	3						
	4						
	5						
	계 *						
	본인상속						

* 계에서는 분가형제에 대한 분가시 배분면적은 제외

④ (Ⅲ형에서) 미분가 형제에 대한 배분농지의 현재관리형태

피배분자	동거여부	지 목	면적 (평)	배분연도	관 리 형 태 *	
					배 분 전	배 분 후

* 관리형태 : ① 피배분자(상속인)경작 ② 본인경작, 생활책임
 ③ 본인경작, 소작료 지불 ④ 본인경작, 소작료 없음
 ⑤ 타인경작, 소작료 본인취득 ⑥ 타인경작, 소작료 피배분자취득
 ⑦ 즉시판매

(5) (Ⅳ형에서) 승계시 상황

- ① 부 승계년도 _____년 본인 만 _____세
- ② 부 사망연도 _____년
- ③ 경지 상속면적 총 _____평 임야 _____평
 논 _____평
 밭 _____평

(6) (Ⅴ형에 있어) 농업으로 전업시

- ① 전업년도 _____년 만 _____세
- ② 전직업 _____
- ③ 전업이유 _____
- ④ 전업시 경지면적

	상	속	구	입	계
논					
밭					
계					

(7) (Ⅰ-Ⅴ형중 현재 비농가의) 영농중단과 농지처분

- ① 영농 중단 연도 _____년
- ② 영농 중단 이유 _____
- ③ 농지의 처분

	총	면	적	판	매	임	대
논							
밭							
계							

- ④ (임대시) 판매하지 않는 이유 _____

(8) 가족, 경지의 연도별 변화*

가족내의 주요변동 (출생, 사망, 분가, 거주이전, 직업변동 등)														연 도	경 지소유면적상의 변화			경 지소유면적 (평)		
부	모	경영수	처												매 (구입자금충당)	입 판 (이유, 판매자금용도)	매 상속 및 증여 (단사자)	논	밭	재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7						

* 앞의 1~7분항에서 조사된 것을 이기한후 보완

參 考 文 獻

- 姜熙涇, 崔仁鉉, 尹鍾周, 「韓國의 家族形態와 家族週期에 관한 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 高永復, “農村人的 社會的 性格,” 「農村社會學」, 民潮社, 1965.
- 權五乘, “農地の 相續과 農地細分化的 防止,” 「피데스」, 22(1), 1978.
- 金璟東, “農村社會의 變化와 爭點,” 「70年代 韓國社會」, 韓國社會學會編, 平民社, 1980.
- 金聖昊, 「農地制度和 農地保全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 「農地所有現況과 改善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政策討議시리즈 31, 1986.
- 金容漢, “農地立法을 위한 實態調査,” 「건대학술지」, 제 17 집, 1974.
- 金疇洙, “農村의 家族과 相續: 公州郡 牛成面의 實際,” 「慶熙法學」, 第3卷 1號, 1961.
- 金俊輔, 「農業經濟學 序說」, 高大出版部, 1971.
- 金春棟, “離農이 小農의 再生產構造에 미친 影響,” 「人類學論集」 第6輯, 서울대 人類學研究會, 1983.
- 申榮鎬, “農地相續立法論,” 「高麗大 大學院 論文集」, 1980.
- 梁會水, 「韓國農村的 村落構造」,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 梁熙玉, 「農家 家計構造를 통해서 본 農民分化에 관한 一研究」, 서울대 碩士學位論文 1983.
- 呂重哲, “韓國農村的 家族週期和 家族類型,” 「韓國文化人類學」, 第9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7.
- 吳乃元, 金鍾琛, 崔洋夫,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 第2卷 1985 基準年度 調査結果,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 李光圭,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一志社, 1975.
- 李 俸, “財產相續의 理論과 實際: 特히 農地相續에 관한 問題를 중심으로,” 「中大論文集」 第17輯, 1972.

- 李英基, 「1960年代以後의 農民層分解에 관한 研究」, 서울대 碩士學位論文, 1982.
- 李貞煥, “大農의 相對的 減少原因과 새로운 大農層의 形成展望,” 「農村經濟」, 第6卷 第4號, 1983.
- 張東燮, “現行農地制度의 不合理性과 그 解決構想,” 「農業經濟研究」, 第22輯, 1981.
- 崔洋夫, “韓國에 있어서 農家經濟에 대한 認識과 農業經濟學,” 1983년도 韓國經濟學會 定期學術大會 發表論文
- , “韓國農業經濟에 대한 認識의 틀을 위한 하나의 試論,” 「木浦大學經濟學科 특별강의원고」(미발표논문), 1984.11.
- , “韓國農業의 構造變化와 發展方向,” 「思想과 政策」, 1985, Vol. 2, No 2.
- , “農業社會化過程에서 韓國農業의 性格變化와 課題,” 「現代社會와 家族」, 第7回福祉社會심포지움論文集,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6.
- 崔洋夫, 朴成佐, 吳乃元, 「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分析」,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崔洋夫, 吳乃元,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 ~ 2001」, [1] 調查研究設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a.
- ,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와 「F-사이클」假說,” 「農村經濟」, 第9卷 第4號, 1986 b.
- 用島武宜, 「農家相續と農地」, 東京大學校出版會, 1965.
- 石渡貞雄, 「小農經濟學」, 亞紀書房, 1970.
- 石川英夫外, 「農村血族의 繼承と擴散의 動態」, 總合研究開發機構, 1982.
- Barnum, Howard N., Lyn Squire, 「A Model of an Agricultural Household」, The World Bank, 1979.
- Binswanger, Hans P., Robert E. Evenson, Cecilia A. Florencio, Benjamin N. F. White, ed., 「Rural Household in Asia」, Singapore Univ. Press, 1980.
- Chajanov, A.V.,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ed. by Daniel Thorner, Basile Kerblay and R.E.F. Suith, Homewood Illinois, Pichard D. Irwin, Inc., 1925.
- Heady, Earl O., 「Economic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Resource Use」, Prentice-Hall, Inc., 1952.

- Scott, James C.,[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Yali Univ. Press,1976.
- Smith, Joan, Imanuel Wallerstein,Hans-Dieter Evers,ed.,[Household and the
World Economy], Sage Publications., 1984 .
- Shanin, Teodor ed.,[Peasant Societies], Penguin Education,1971.

M15-5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1985~2001) ⑤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分析

1987年 12月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①③②-②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刷

株式會社 文苑社

電話 739-3911~4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